
201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안내서

2014. 12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목 차

□ 2014년 평가 추진 계획	1
1. 201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구성별 배점 구성	5
2. 201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주요내용	9
3. 201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	17
4. 부 록	53
- [양식 1] 취업 확인서 양식	55
- [양식 2] 후원금수입 및 지출결과보고서	56
- [양식 3] 13년 14년 사업단수	57
- [양식 4] 재무회계 투명성 :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양식 ...	58
□ 2014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항목 안내	87
□ 첨부	
- 2014년도공공기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304개)	104

201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추진계획

□ 평가개요

- 평가 대상기간: '14. 1. 1~'14. 12. 31(12개월)
- 평가 방법: 성과관리시스템 및 서류평가
- 평가자료입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성과관리시스템
- 평가 추진체계

수행주체	역할 및 수행내용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 업무 총괄
중앙자활센터	평가업무 실무 총괄 (계획수립, 평가실행, 결과산출 등)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2 제1항 3호에 따라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 토록함.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증빙공지, 평가자료 확인서 제출, 서류평가결과 및 이의신청확인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에 따른 기초자료 입력,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

□ 유형별 평가지표

◇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78점**,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는 **특성화지표는 22점**

- 기본 지표외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산하는 '**추가지표**'를 **3점**의 범위내에서 적용(예정)

※ 추가지표는 추후에 공지 예정임(자활패널 3차조사 등)

1 공통지표

- 자활성과,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참여자 관리, 센터 운영 등의 5개 대지표로 설정

2 특성화지표

- 외부자원후원,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등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유형에 반영되는 지표로 설정

3 추가지표설정

- 총점 중 3점의 범위내에서 운영
 - 평가대상기준 중 추가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평가 증빙서류 제출

- 평가 증빙서류 제출방법
 - 센터별로 각 2부를 작성(제본)하여 (공문첨부) 1부는 해당 지자체, 1부는 중앙자활센터에 제출
 - 제출기한 : 2015년 2월 23일(월) 18시까지 도착분 (시간엄수)*추후 변동가능
 - ※ 18시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전화통지예정(전화통지가 없을 경우 수령완료)
 - 주 소 : (100-86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7층
(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 기타문의 : 02) 3415-6934 / sparrow20@cssf.or.kr

□ 평가 세부일정

단계	구분	내 용	기간
사전 준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설명회	(중앙자활센터) 평가 설명회	2014년 7월 2일(수)
1단계	기초자료 입력	(지역자활센터)행복e음 참여자 배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	2015년 1월 16일(금)까지
2단계	추가 입력	(지역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2015년 1월 26(월) ~ 2월 13일(금)까지
3단계	평가 제출서류 양식 다운	(지역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평가지표별 서류양식 다운	
4단계	평가 증빙서류 제출	(지역자활센터)평가지표별 증빙서류 제본 및 제출	2015년 2월 23일(월)(18 까지) ※시간엄수
5단계	1차 결과 발표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 1차 결과 발표	2015년 4월 10일(금)
6단계	이의신청 기간	(중앙자활센터) 1차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2015년 4월 13일(월) ~ 4월 17일(금)
7단계	2차 결과발표	(중앙자활센터) 이의신청 반영된 2차 결과발표	2015년 4월 말
8단계	평가결과 산출	(중앙자활센터) 최종 평가 결과 산출	2015년 4월 말
9단계	최종결과 발표	(복지부) 최종 평가 결과 발표	2015년 5월 초

※ 평가진행사항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정변경 시 공문통지예정)

1. 201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구성별 배점 구성

1

2014년 지역자활센터 지표구성별 배점 구성

구분	지 표 명				점수	비고
공통 지표 (78점)	①자활 성과 (26)	자활 성공률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15	
			자활기업 취·창업을 탈수급률(자활특례포함)		5	
		취업 유지율	3개월 유지율		2	
			6개월 유지율		4	
		②사업단 운영 (20)	시장 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4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3	
			1인당 연평균 수익금		2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전문자격증 취득비율(1년 이내)		6	
			민간자격증 취득비율(1년 이내)			
	상위학위 및 검정고시취득(교육부인정)					
	③자활 기업(8)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4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2	신규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2	신규
	④참여자 관리(10)	직무교육 이수율			4	
		소양교육 이수율			3	
		참여자 사례회의 개최율			3	
	⑤센터 운영 (14)	종사자 1인당 직무교육 이수율			2	
		종사자 복지지원			2	신규
		홍보			2	
		종사자 근속년수			2	
		재무회계 투명성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3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3	
특성화 지표 (22점)	⑥외부자원 후원(5)		외부기관 후원연계 건수		2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3	신규
	⑦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10)	지자체(공공) 위탁사업 건수		3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3		
		지역자활센터 사업적 혁신성		4	신규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율		4	신규	
	⑧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7)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3		

2013년과 201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비교

구분	지 표 명			배점	
				14년	13년
공통 지표 (78점)	①자활 성과 (26)	자활 성공률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 (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15	15
			자활기업 취·창업률		
			탈수급률(자활특례포함)	5	5
		취업 유지율	3개월 유지율	2	2
			6개월 유지율	4	4
	②사업단 운영 (20)	시장 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4	3
			1인당 월평균 매출액	3	3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3	4
			1인당 연평균 수익금	2	3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	3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전문자격증 취득비율(1년 이내)		
			민간자격증 취득비율(1년 이내)	6	6
	③자활 기업 (8)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4	5
		자활기업 수급자 비율		삭제	2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2	신규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2	신규
	④ 참여자 관리 (10)	직무교육 이수율		4	4
		소양교육 이수율		3	4
		참여자 사례회의 개최율		3	4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2	2
	⑤센터 운영(14)	종사자 복지지원		2	신규
		홍보		2	3
		종사자 근속년수		2	3
		재무회계의 투명성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3	5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3	5
특성화 지표 (22점)	⑥외부자원 후원(5)	외부기관 후원연계 건수		2	3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3	신규
	⑦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10)	지자체(공공) 위탁사업 건수		3	3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3	3
		지역자활센터 사업적 혁신성		4	신규
	⑧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7)	자활사업 미참여자 지역일자리 성공률		삭제	3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율		4	신규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3	3

2. 201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주요내용

2

201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주요내용

1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내 참여자 개념

1. 평가대상 참여자의 범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평가대상 범위	
자활근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게이트웨이,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단, 게이트웨이(gateway)참여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에만 한정하며 자활성과(취·창업률, 탈수급률, 3개월·6개월 취업유지율)지표에서만 포함하며 다른지표에서 제외됨. ※ 단,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과 동일하게 평가
자활기업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 참여자 ※ 단, 자활기업 참여자중 일반인은 최저임금 이상자만 포함

○ 평가제외

- 바우처 참여자 제외, 조건불이행자 제외
- 근로유지형사업단, 인턴형, 도우미형 사업단 참여자 제외

2. 평가 기간

- 평가대상기간: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 주요 기준

- 2014년 월 최저임금 : 1,088,890원
- 2014년 시장진입형 월 표준소득액: 850,200원

1. 평가대상 종사자의 범위

- 센터장
-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희망키움통장 전담관리자
-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 사례관리 전담관리자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전담관리자

○ 평가제외

- (평가대상 종사자의 범위에 불포함 되는) 사업비 지원 종사자

영역	2013년 평가지표	비고	2014년 평가지표
① 자활성과	취·창업률	평가내용, 증빙서류, 산식 수정	취·창업률
	탈수급률	증빙서류, 산식 수정	탈수급률
	3개월 유지율	평가내용, 증빙서류 수정	3개월 유지율
	6개월 유지율	평가내용, 증빙서류 수정	6개월 유지율
② 사업단운영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유지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유지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유지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유지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유지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산식 수정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③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유지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신규지표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신규지표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④ 참여자관리	직무교육 이수율	평가내용, 증빙서류, 산식 수정	직무교육 이수율
	소양교육 이수율	평가내용, 증빙서류, 산식 수정	소양교육 이수율
	사례회의 개최	산식 수정	사례회의 개최
⑤ 센터운영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수정	
	신규지표		종사자 복지지원
	홍보건수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증빙서류, 산식 수정	홍보건수
	종사자 근속년수	평가대상자 수정	종사자 근속년수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유지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유지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⑥ 외부자원 후원	후원연계 건수	평가내용, 증빙서류, 산식 수정	후원연계 건수
	신규지표		지역의 사회적 공헌건수
⑦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지자체(공공) 위탁사업건수	평가내용 수정	공공 위탁사업건수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평가내용 수정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신규지표		지역자활센터 사업적 혁신성
⑧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신규지표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
	사회적 경제관련 네트워크건수	평가내용 수정	사회적 경제관련 네트워크건수

영역	2013년 평가지표 구간		지표명	2014년 평가지표 구간	
① 자활성과	0점	0%~3%미만	취·창업률 (절대평가:15점)	0점	0%
	1점	3%이상~6%미만		1점	0%초과~3%미만
	3점	6%이상~9%미만		3점	3%이상~6%미만
	5점	9%이상~12%미만		5점	6%이상~9%미만
	7점	12%이상~15%미만		7점	9%이상~12%미만
	9점	15%이상~18%미만		9점	12%이상~15%미만
	11점	18%이상~21%미만		11점	15%이상~18%미만
	13점	21%이상~24%미만		13점	18%이상~21%미만
	15점	24%이상~		15점	21%이상~
	0점	0%	탈수급률 (절대평가:5점)	0점	0%
	1점	1%이상~3%미만		1점	0%초과~3%미만
	2점	3%이상~6%미만		2점	3%이상~6%미만
	3점	6%이상~9%미만		3점	6%이상~9%미만
	4점	9%이상~12%미만		4점	9%이상~12%미만
	5점	12%이상~		5점	12%이상~
	0점	0%	3개월 유지율 (절대평가:2점)	0점	0%
	1점	90%미만		1점	0%초과~90%미만
	2점	90%이상		2점	90%이상~
	0점	0%	6개월 유지율 (절대평가:4점)	0점	0%
	1점	70%미만		1점	0%초과~60%미만
	2점	70%이상~80%미만		2점	60%이상~75%미만
	3점	80%이상~90%미만		3점	75%이상~90%미만
	4점	90%이상~		4점	90%이상~
② 사업단운영	0점	0%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상대평가: 3점↔4점)	0점	0%
	1점	하위30%		1점	상위 75%미만
	2점	중위40%		2점	상위 50%미만~75%이상
	3점	상위30%		3점	상위 25%미만~50%이상
				4점	상위 25%이상~
	0점	0%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상대평가: 3점)	0점	0%
	1점	하위 30%		1점	하위 30%
	2점	중위 40%		2점	중위 40%
	3점	상위 30%		3점	상위 30%
	0점	0점	(사회서비스형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절대평가:4점↔3점)	0점	0점
	1점	1점 이상~70점 미만		1점	0점 초과~85점 미만
	2점	70점 이상~80점미만		2점	85점이상~95점미만
	3점	80점 이상~90점미만		3점	95점이상~
	4점	90점 이상~			
	0점	0원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상대평가: 3점↔2점)	0점	0원
	1점	하위30%		1점	하위50%
	2점	중위40%		2점	상위50%
	3점	상위30%			
	0점	0원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상대평가: 3점↔2점)	0점	0원
	1점	하위30%		1점	하위50%
	2점	중위30%			

영역	2013년 평가지표 구간		지표명	2014년 평가지표 구간	
	3점	상위30%	참여자 인적자본 향상지원 (절대평가: 6점)	2점	상위50%
	0점	0%		0점	0%
	1점	1%이상~3%미만		1점	0%초과~5%미만
	2점	3%이상~5%미만		2점	5%이상~8%미만
	3점	5%이상~7%미만		3점	8%이상~11%미만
	4점	7%이상~9%미만		4점	11%이상~14%미만
	5점	9%이상~11%미만		5점	14%이상~17%미만
	6점	11%이상~		6점	17%이상~
③ 자활기업	0점	최저임금이하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절대평가: 5점→4점)	0점	최저임금미만
	1점	최저임금이상 ~최저임금 110%미만		1점	최저임금이상 ~최저임금 110%미만
	3점	최저임금 110% ~최저임금120%미만		2점	최저임금 110% ~최저임금115%미만
	5점	최저임금120%이상		3점	최저임금 115% ~최저임금120%미만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신규지표, 상대평가: 2점)			4점	최저임금120%이상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신규지표, 상대평가: 2점)			0점	0
				1점	하위50%
				2점	상위50%
				0점	0
				1점	하위50%
		2점	상위50%		
④ 참여자관리	0점	0%	직무교육 이수율 (절대평가: 4점)	0점	0%
	1점	1%이상~85%미만		1점	0%초과~70%미만
	2점	80%이상~90%미만		2점	70%이상~85%미만
	3점	90%이상~95%미만		3점	85%이상~95%미만
	4점	95%이상		4점	95%이상
	0점	0%	소양교육 이수율 (절대평가: 4점→3점)	0점	0%
	1점	1%이상~85%미만		1점	0%초과~70%미만
	2점	85%이상~90%미만		2점	70%이상~90%미만
	3점	90%이상~95%미만		3점	90%이상~
	4점	95%이상~			
	0점	0건	사례회의 개최 (절대평가: 4점→3점)	0점	0건
	1점	1건이상~12건이하		1점	1건이상~12건미만
	2점	12건이상~18건미만		2점	12건이상~24건미만
	3점	18건이상~24건미만		3점	24건이상~
4점	24건 이상~				
⑤ 센터운영	0점	0%	종사자 직무교육이수율 (절대평가: 2점)	0점	0%
	1점	1%이상~90%미만		1점	0%초과~80%미만
	2점	90%이상		2점	80%이상
	종사자 복지지원 (신규지표, 절대평가: 2점)			0점	달성 항목 없음
				1점	1가지~2가지 항목 달성
				2점	3가지 항목 달성

영역	2013년 평가지표 구간		지표명	2014년 평가지표 구간	
	0점	0건	홍보건수 (절대평가: 3점⇨2점)	0점	0건
	1점	1건이상~15건미만		1점	언론홍보1건이상~10건미만 +홍보자료1건
	2점	15건이상~30건미만		2점	언론홍보10건이상 +홍보자료2건이상
	3점	30건이상			
	0점	0%	종사자 근속년수 (상대평가: 3점⇨2점)	0점	0%
	1점	70%이상~100%미만		1점	하위70%미만
	2점	30%이상~70%미만		2점	상위30%이상
	3점	상위30%이상~			
	0점	미제출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절대평가: 5점⇨3점)	0점	미제출
	5점	제출		2점	미흡제출
				3점	완성제출
	0점	미제출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절대평가: 5점⇨3점)	0점	미제출
	5점	제출		3점	제출
⑥ 외부자원 후원	0점	0건	후원연계 건수 (절대평가: 3점⇨2점)	0점	후원금액 50만원 미만 후원(물품)건수 5건미만
	1점	물품후원10건미만		1점	후원금액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 후원(물품)건수 5건이상~10 건미만
	2점	재정후원500만원 미만 또는 물품후원10건이상		2점	후원금액 100만원이상~ + 후원(물품)건수 10건이상~
	3점	재정적후원 500만원이상			
	지역의 사회적 공헌건수 (신규지표, 절대평가: 3점)			0점	달성 항목 없음
				1점	1가지 항목 달성
				2점	2가지 항목 달성
				3점	3가지 항목 달성
	⑦ 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0점	0건	공공 위탁사업건수 (절대평가: 3점)	0점
1점		1건이상~5건미만	1점		1건이상~5건미만
2점		5건이상~10건미만	2점		5건이상~10건미만
3점		10건이상~	3점		10건이상~
0점		0건	민간(기업, 단체 등)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절대평가: 3점)	0점	0건
1점		1건이상~6건미만		1점	1건이상~6건미만
2점		6건이상~12건미만		2점	6건이상~12건미만
3점		12건이상		3점	12건이상
지역자활센터 사업적 혁신성 (신규지표, 상대평가: 4점)			0점	0%	
			1점	상위75미만~100%이상	
			2점	상위 50%미만~75%이상	
			3점	상위25%미만~50%이상	
			4점	상위25%이상~	
⑧ 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 (신규지표, 상대평가: 4점)			0점	0%
				1점	상위75미만~100%이상
				2점	상위 50%미만~75%이상
				3점	상위25%미만~50%이상
				4점	상위25%이상~
	1점	0건이상~5건미만	사회적 경제관련 네트워크건수 (절대평가: 3점)	0점	0건
	2점	5건이상~10건미만		1점	1건이상~5건미만
3점	10건이상	2점		5건이상~10건미만	
			3점	10건이상~	

3. 201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설명 및 예시

1

자 활 성 과

평가지표	취·창업율	평가점수	15점
평가목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사업단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에 취·창업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2014년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게이트웨이(gateway) 참여자는 게이트웨이과정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만 한정 * 만일 30일미만 게이트웨이(gateway)참여자가 취업을 성공한 경우는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율 지표 성과로 인정가능		
평가내용	☐ 취업성공자 인정기준(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이내 취업한 경우 ②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③ 월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850,200원) 이상자 ☐ 창업성공자 인정기준(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1개월(30일)이내 창업한 경우 ② 2015년 1월 31일이내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자 ※단, 일반자활기업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활기업인정서만 취득하였을 경우는 불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취업성공자 필수서류: <u>(모두제출)</u> ① 취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ex.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②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ex. 취업기간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ex.고용보험 득실확인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함. ○ 취업성공자 대체서류: [양식-1] 양식에 의거한 서류를 작성하되, <u>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u>를 반드시 명시할 것 ○ 창업성공자 필수서류: ① 2014년 창업자(사업자 등록증 기준)로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자 ※단, 자활기업의 형태가 아닌 (조합, 협동조합)으로 운영될 경우 -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조합원이 상호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정관, 조합원 명부를 제출(모두제출) ★단, 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함께 제출해야만 협동조합 창업으로 인정가능함.		
평가방법 (산식)	$\{ [\text{취·창업자성공자수} + (\text{최저임금이상인원수} \times 0.5) + (\text{최저임금}150\% \text{이상인원수} \times 0.5)] / \text{취·창업율 평가대상자} \} \times 100$		

	<table border="1"> <tr> <td rowspan="4">예 시</td><td colspan="2">A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 시장, 시범, 게이트웨이30일이상) 참여자수=100명</td></tr> <tr> <td colspan="2">2014년 사업단 참여 취업자=10명</td></tr> <tr> <td>고용보험</td><td>월급여 850,200원 이상 ~ 1,088,890원 미만자= 7명</td></tr> <tr> <td>가입사업장 취업자</td><td>월급여 1,088,890원 이상 ~ 1,633,335원 미만자= 2명 월급여 1,633,335원 이상자= 1명</td></tr> <tr> <td colspan="3">2014년 사업단 참여 창업자=3명</td></tr> </table> 이 경우 A지역자활센터의 취·창업성공률은? $\frac{13 + (3 \times 0.5) + (1 \times 0.5)}{100} \times 100 = 15\%$		예 시	A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 시장, 시범, 게이트웨이30일이상) 참여자수=100명		2014년 사업단 참여 취업자=10명		고용보험	월급여 850,200원 이상 ~ 1,088,890원 미만자= 7명	가입사업장 취업자	월급여 1,088,890원 이상 ~ 1,633,335원 미만자= 2명 월급여 1,633,335원 이상자= 1명	2014년 사업단 참여 창업자=3명		
예 시	A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 시장, 시범, 게이트웨이30일이상) 참여자수=100명													
	2014년 사업단 참여 취업자=10명													
	고용보험	월급여 850,200원 이상 ~ 1,088,890원 미만자= 7명												
	가입사업장 취업자	월급여 1,088,890원 이상 ~ 1,633,335원 미만자= 2명 월급여 1,633,335원 이상자= 1명												
2014년 사업단 참여 창업자=3명														
비고	※ 최대 취·창업인정일: 2015년 1월 31일 ※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희망리본사업 참여, 취성패 참여 후 취업자는 취업성공자에서 제외 ※ 2014년 최저임금=1,088,890원, 최저임금 150%=1,633,335원 ※ 취업후 퇴사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재진입한자는 취업성공자에서 제외													
배점방식 (절대평가:15점)	0점	0%												
	1점	0%초과 ~ 3%미만												
	3점	3%이상 ~ 6%미만												
	5점	6%이상 ~ 9%미만												
	7점	9%이상 ~ 12%미만												
	9점	12%이상 ~ 15%미만												
	11점	15%이상 ~ 18%미만												
	13점	18%이상 ~ 21%미만												
	15점	21%이상												
Q/A	Q: 취업자의 경우 사업단 종료 후 1개월(30일) 이내의 취업을 취업성공자로 인정하는데, 창업의 경우도 사업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의 창업을 창업성공자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A: 창업자도 1개월 이내의 창업을 성과로 인정합니다. Q: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한 경우는 인가증이 나온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1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이 불가한가요? A: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하여 설립인가증을 받은 경우에는(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 불가능함) 설립초기 정관을 비롯한 설립신고신청서가 사업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을 경우 창업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 창업자의 경우에도 최대 창업인정일이 2015년 1월 31일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평가지표	탈수급률	평가점수	5점
평가목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수급자가 얼마나 탈수급을 하였나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2014년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게이트웨이(gateway) 참여자는 게이트웨이과정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만 한정		
평가내용	□ 탈수급자 인정기준 ① 수급자(일반수급, 시설수급, 조건부수급) ⇒ 탈수급(자활특례, 이행특례, 차상위, 일반인) ②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동안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를 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유형변경 확인일자 및 기존유형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ex. 지자체 공문 등) ② <u>가산점증빙을 위한 필수서류</u>: 본인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사유 확인이 가능한 문서(ex. 지자체 확인서 등)		
평가방법 (산식)	[탈수급자수+(본인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 수*0.5)]/ 탈수급률 평가대상자 ※ 단, 본인소득의 증가로 (일반수급, 시설수급, 조건부수급자가 ⇒ 차상위, 일반인으로 탈수급 한 경우 0.5배 가산점 부여		
비고	※ 최대 탈수급인정일: 2015년 1월 31일		
배점방식 (절대평가:5점)	0점	0%	
	1점	0%초과 ~ 3%미만	
	2점	3%이상 ~ 6%미만	
	3점	6%이상 ~ 9%미만	
	4점	9%이상 ~ 12%미만	
	5점	12%이상	
Q/A	Q: 수급자가 자활특례나 이행특례자로 탈수급 한 경우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평가지표	3개월(90일) 취업유지율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3개월(9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를 검토			
평가대상자	2014년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참여자(실수령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게이트웨이(gateway) 참여자는 게이트웨이과정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만 한정			
평가내용	☐ 3개월 취업유지율 인정기준(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2013년 10월 3일 이후 취업한 취업성공자가 3개월(90일)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취업성공자 중 3개월 연속 급여가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850,200원)이상자 ③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 3개월 동안 동일취업기관을 인정하며 이직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취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② 3개월 연속 월 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850,200원)이상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취업기간 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고용보험득실확인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함. ☐ 대체서류 - 단, 안내서 내 [양식-1] 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반드시 표기 ② 취업일과 퇴사일 또는 취업일과 서류발급일이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 ③ 월급여가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 ④ 대표자 직인 반드시 표기			
평가방법 (산식)	취업성공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참여자수(14년 유지자수 ¹⁾ , 13년 유지자수 ²⁾) / 취업성공자수(14년, 13년 성공자수) ¹⁾ 2014년 10월 2일 이전 취업자 중 3개월(90일)유지자 ²⁾ 2013년 10월 3일 이후 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 중 3개월(90일)유지자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2점)	0점	0%		
	1점	0%초과~90%미만		
	2점	90%이상~		
Q/A	Q: 대체서류를 이용하여서 증빙서류를 제출 할 경우는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취업일과 퇴사일 또는 취업일과 서류발급일, 월급여,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다 표기되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평가지표	6개월(180일) 취업유지율		평가점수	4점
평가목표	6개월(180일)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를 검토			
평가대상자	2014년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게이트웨이(gateway) 참여자는 게이트웨이과정에 30일(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이상 참여한 참여자만 한정			
평가내용	□ 6개월 취업유지율 인정기준(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2013년 7월 5일 이후 취업한 취업성공자가 6개월(180일)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② 취업성공자 중 6개월 연속 급여가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850,200원)이상자 ③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 6개월 동안 이직은 15일 이내에 1회만 인정하며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자와 재취업 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취업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② 6개월 연속 월 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850,200원)이상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취업기간 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③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고용보험득실확인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함. ○ 대체서류 - 단, 안내서 내 [양식-1] 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반드시 표기 ② 취업일과 퇴사일 또는 취업일과 서류발급일이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 ③ 월급여가 반드시 명확하게 표기 ④ 대표자 직인 반드시 표기			
평가방법 (산식)	[취업성공자 중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참여자수(14년 유지자수 ¹⁾ , 13년 유지자수 ²⁾) / 취업성공자수(14년, 13년 성공자수) 1) 2014년 7월 4일 이전 취업자 중 6개월(180일)유지자 2) 2013년 7월 5일 이후 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 중 6개월(180일)유지자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4점)	0점	0%		
	1점	0%초과 ~ 60%미만		
	2점	60%이상 ~ 75%미만		
	3점	75%이상 ~ 90%미만		
	4점	90%이상		
Q/A	Q: 대체서류를 이용하여서 증빙서류를 제출 할 경우는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취업일과 퇴사일 또는 취업일과 서류발급일, 월급여,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다 표기되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2 사업단 운영

평가지표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평가점수	4점															
평가목표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연평균 수익금을 검토																	
평가대상자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시장진입형 사업단																	
평가내용	☐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수익금: 매출액 정산액 ☐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인정기준 - 제출한 증빙서류와 성과시스템과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정 -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 수익금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수익금 산정에 취함 - 수익금은 분기별로 계산(자활사업안내와 동일, 참여자는 연간실인원으로 중복자 제외) -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수익금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수익금 분기 최종보고서류(자활사업안내P132 양식사용 권장)																	
평가방법 (산식)	사업단 분기별수익금총액의 합/ 사업단 연간 총참여자수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table><thead><tr><th>사업단</th><th>1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th><th>2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th><th>3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th><th>4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th></tr></thead><tbody><tr><td>○○</td><td>2/100</td><td>3/300</td><td>2/200</td><td>2/200</td></tr><tr><td>★★</td><td>2/100</td><td>3/200</td><td>3/200</td><td>2/200</td></tr></tbody></table> ○○ 사업단: (100+300+200+200)/3 -----① ★★ 사업단: (100+200+200+200)/3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연평균 수익금= (① + ②)/2개 사업단			사업단	1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2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3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4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	2/100	3/300	2/200	2/200	★★	2/100	3/200	3/200	2/200
사업단	1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2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3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4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	2/100	3/300	2/200	2/200														
★★	2/100	3/200	3/200	2/200														
비고																		
배점방식 (상대평가:4점)	0점	0원																
	1점	상위 75%미만																
	2점	상위 50%미만~75%이상																
	3점	상위 25%미만~50%이상																
	4점	상위 25%이상																
Q/A																		

평가지표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월평균 매출액을 검토																										
평가대상자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시장진입형 사업단																										
평가내용	☐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사업실시결과 발생한 매출의 총액 ☐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인정기준 - 제출한 증빙서류와 성과시스템과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정 -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 매출액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매출액 산정에 취함 - 매출액을 카드대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인정(지자체 수익금 및 매출액 보고자료와 동일하게 적용) -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매출액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매출액 월 최종보고서류(자활사업안내P132 양식사용 권장)																										
평가방법 (산식)	Σ(사업단 월매출총액/사업단 월참여자수)/사업기간월수 예시 A 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table><tr><td></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r><tr><td>사업단</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r><tr><td>○○</td><td>2/100</td><td>3/300</td><td>2/200</td><td>2/200</td><td>2/200</td></tr><tr><td>★★</td><td></td><td>3/200</td><td>3/200</td><td>2/200</td><td></td></tr></table> ○○ 사업단: (100/2+300/3+200/2+200/2+200/2)/5개월 -----① ★★ 사업단: (200/3+200/3+200/2)/3개월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월평균 매출액= (① + ②)/2개 사업단				1월	2월	3월	4월	5월	사업단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	2/100	3/300	2/200	2/200	2/200	★★		3/200	3/200	2/200	
	1월	2월	3월	4월	5월																						
사업단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	2/100	3/300	2/200	2/200	2/200																						
★★		3/200	3/200	2/200																							
비고																											
배점방식 (상대평가:3점)	0점	0%																									
	1점	하위 30%																									
	2점	중위 40%																									
	3점	상위 30%																									
Q/A																											

평가지표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연평균 수익금을 검토																												
평가대상자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금&매출액 평가시 제외되는 사업단(2014 자활근로사업안내 p102) > ① 간병서비스 사업단 ② 장애인통합보조교육 사업단 ③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사업단 ④ 시군구의 결정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단(지자체 승인공문 첨부) *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은 평가대상자 아님 ※ 단, 상위 사업단을 제외한 수익형사업단을 비수익형으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임의로 변환가능																												
평가내용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수익금: 매출액 정산액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인정기준 ① 제출한 증빙서류와 성과시스템과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정 ②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③ 수익금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수익금 산정에 취함 ④ 수익금은 분기별로 계산(자활사업안내와 동일, 참여자는 연간실인원으로 중복자 제외) ⑤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수익금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수익금 분기 최종보고서류(자활사업안내P132 양식사용 권장)																												
평가방법 (산식)	사업단 분기별수익금총액의 합/ 사업단 연간 총참여자수 <table><tr><td rowspan="5">예시</td><td colspan="5">A지역자활센터의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td></tr><tr><td>사업단</td><td>1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td><td>2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td><td>3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td><td>4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td></tr><tr><td>○○</td><td>2/100</td><td>3/300</td><td>2/200</td><td>2/200</td></tr><tr><td>★★</td><td>2/100</td><td>3/200</td><td>3/200</td><td>2/200</td></tr><tr><td colspan="5">○○ 사업단: (100+300+200+200)/3 -----① ★★ 사업단: (100+200+200+200)/3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연평균 수익금= (① + ②)/2개 사업단</td></tr></table>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사업단	1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2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3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4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	2/100	3/300	2/200	2/200	★★	2/100	3/200	3/200	2/200	○○ 사업단: (100+300+200+200)/3 -----① ★★ 사업단: (100+200+200+200)/3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연평균 수익금= (① + ②)/2개 사업단				
예시	A지역자활센터의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사업단	1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2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3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4분기 (참여자수 /월수익금)																							
	○○	2/100	3/300		2/200	2/200																							
	★★	2/100	3/200		3/200	2/200																							
	○○ 사업단: (100+300+200+200)/3 -----① ★★ 사업단: (100+200+200+200)/3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연평균 수익금= (① + ②)/2개 사업단																												
비고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은 평가대상자 아님																												

배점방식 (상대평가:2점)	0점	0원
	1점	하위 50%
	2점	상위 50%
Q/A	Q: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수익금 매출액을 평가 받지 않는 사업단만을 운영하는 경우는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에 대해서는 기본점수(추후고지)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월평균 매출액을 검토																										
평가대상자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금&매출액 평가시 제외되는 사업단(2014 자활근로사업안내 p102) > ① 간병서비스 사업단 ② 장애인통합보조교육 사업단 ③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사업단 ④ 시군구의 결정으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단(지자체 승인공문 첨부) *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은 평가대상자 아님 ※ 단, 상위 사업단을 제외한 수익형사업단을 비수익형으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확인 후 임의로 변환가능																										
평가내용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사업실시결과 발생한 매출의 총액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인정기준 ① 제출한 증빙서류와 성과시스템과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정 ② 평가대상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모두 대입하여 계산 ③ 매출액을 발생하지 않은 사업단도 사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평균 매출액 산정에 취함 ④ 매출액을 카드대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인정(지자체 수익금 및 매출액 보고자료와 동일하게 적용) ⑤ 평가대상 기간내에 사업단 유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평가기간동안의 사업유지기간을 계산하여 입력, 매출액은 사업유형별로 유지된 기간(월)과 참여자수를 반영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매출액 월 최종보고서류(자활사업안내P132 양식사용 권장)																										
평가방법 (산식)	Σ(사업단 월매출총액/사업단 월참여자수)/사업기간월수 예시 A 지역자활센터의 시장진입형사업단 1인당 월평균 매출액?<table><tr><td></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r><tr><td>사업단</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d>(참여자수 /월매출액)</td></tr><tr><td>○○</td><td>2/100</td><td>3/300</td><td>2/200</td><td>2/200</td><td>2/200</td></tr><tr><td>★★</td><td></td><td>3/200</td><td>3/200</td><td>2/200</td><td></td></tr></table> ○○ 사업단: (100/2+300/3+200/2+200/2+200/2)/5개월 -----① ★★ 사업단: (200/3+200/3+200/2)/3개월 -----② ➡ A지역자활센터 1인당 월평균 매출액= (① + ②)/2개 사업단				1월	2월	3월	4월	5월	사업단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	2/100	3/300	2/200	2/200	2/200	★★		3/200	3/200	2/200	
	1월	2월	3월	4월	5월																						
사업단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참여자수 /월매출액)																						
○○	2/100	3/300	2/200	2/200	2/200																						
★★		3/200	3/200	2/200																							
비고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은 평가대상자 아님																										

배점방식 (상대평가:2점)	0점	0원
	1점	하위 50%
	2점	상위 50%
Q/A	Q: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수익금 매출액을 평가 받지 않는 사업단만을 운영하는 경우는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에 대해서는 기본점수(추후고지)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	참여자인적자본 향상지원		평가점수	6점
평가목표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 및 학위취득의 성과 여부검토			
평가대상자	2014년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참여한 참여자(실수혜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평가내용	☐ 전문자격 전문자격은 국가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에 등록되거나 국가자격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 ☐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국가외 지자체, 개인·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및 발급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 정보서비스(http://www.pqi.or.kr)에 공인되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학위취득 교육부인정 학위 및 상위학력(초, 중, 고 검정고시 포함)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자격증, 합격증, 학위취득증(선택제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함 ○ 대체서류: 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증빙서류 필수포함사항 ① 자격증 사본에는 취득일, 취득자 이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위취득예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평가방법 (산식)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1인 2개이상 자격증 취득자수*0.5)] / 자격증 및 학위취득을 평가대상자 ※ 단, 1인 2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추가 0.5 가산점부여(전문, 민간 자격증 구분관계없음)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6점)	0점	0%		
	1점	0%초과~5%미만		
	2점	5%이상~8%미만		
	3점	8%이상~11%미만		
	4점	11%이상~14%미만		
	5점	14%이상~17%미만		
	6점	17%이상~		
Q/A	Q: 1인이 학위를 2개 취득한 경우는 가산점이 없는 것인가요? A: 네, 없습니다. Q: 학위취득은 일자가 2015년 2월 예정까지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14년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위취득예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자격증 취득의 경우 일자가 2015년 2월 예정까지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14년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취득예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자 활 기 업

평가지표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평가점수	4점
평가목표	자활기업 참여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을 검토		
평가대상자	3년(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내 자활기업 참여자 중에서 2014년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 최저임금이하 일반인 참여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내용	☐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공제전)으로 각 자활기업의 매월 참여인원 급여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사업기간 동안의 평균값으로 최종 산출 ☐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인정기준 ① 센터에 복수의 자활기업이 있으므로 각 자활기업의 일인당 월평균 급여의 합을 자활기업수로 나눈 값이 센터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으로 산출함 ② 자활기업 인건비는 사회보험(자기부담금만포함), 퇴직금(실제 퇴직한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한하며 퇴직적립금은 제외), 성과금, 상여금, 각종보상금 포함 ③ 일반참여자는 최저임금 월(1,088,890원)이상자만 포함 ④ 자활기업 수에 포함된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는 참여자 중 한시적 인건비에 해당 하는 금액은 제외		
증빙서류	☐ 증빙서류(선택제출)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 한시적인건비지원금액 대상자 별도표시		
평가방법 (산식)	Σ(자활기업월인건비총액/ 월참여자수)/사업기간월수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4점)	0점	최저임금미만	
	1점	최저임금이상 ~ 최저임금 110%미만	
	2점	최저임금 110%이상 ~ 최저임금 115%미만	
	3점	최저임금 115%이상 ~ 최저임금 120%미만	
	4점	최저임금 120%이상~	
Q/A	Q: 2014년 12월 말경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였을 경우 만한달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월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 2015년 1월 급여를 2014년 12월 급여로 산정합니다. ※단, 이는 14년 12월 중에 창업하여 14년 운영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는 자활기업의 경우만 해당됨.		

평가지표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얼마나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3년(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내 자활기업 중 2014년에 1일 이상 운영한 자활기업																											
평가내용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3년이내 자활기업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에 대한 2014년 근속년수율로 자활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얼마나 제공하였는지를 확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사회복지급여통지서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활기업 최초참여당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제출(ex. 차상위계층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것을 증빙서류로 인정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② 재직증명서 ③ 자활기업 요건충족 신고서류: 자활기업 구성원 명단 및 수급유형이 확인 가능한 서류(ex. 자활기업 설립당시 사업계획서, 지자체 승인공문 등)																											
평가방법 (산식)	(2014년 12월 31일(or 자활기업폐업시점) 자활기업 참여자 중 자활기업 (최초)참여시점의 취약계층 인원 / 자활기업 최초인정시점의 취약계층 인원수)×100 A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은? ☒ 자활기업 a의 최초인정시점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인원=2명 <table><tr><th>참여자</th><th>자활기업참여일</th><th>자활기업 (최초) 참여시점 수급유형</th><th>2014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유형</th></tr><tr><td>김**</td><td>2014년 1월 15일</td><td>수급자</td><td>일반인</td></tr><tr><td>정**</td><td>2013년 5월 10일</td><td>차상위</td><td>차상위</td></tr><tr><td>신**</td><td>2014년 4월 7일</td><td>수급자</td><td>일반인</td></tr><tr><td>박**</td><td>2014년 7월 1일</td><td>수급자</td><td>일반인</td></tr><tr><td>이**</td><td>2012년 2월 22일</td><td>일반인</td><td>수급자</td></tr></table> ➔ 정답: $\frac{4}{2} \times 100 = 200\%$ 해설: 분모- 자활기업 최초인정시점 취약계층 인원 2명 분자- 자활기업 (최초)참여시점 취약계층(김**,정**,신**,박**) 4명				참여자	자활기업참여일	자활기업 (최초) 참여시점 수급유형	2014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유형	김**	2014년 1월 15일	수급자	일반인	정**	2013년 5월 10일	차상위	차상위	신**	2014년 4월 7일	수급자	일반인	박**	2014년 7월 1일	수급자	일반인	이**	2012년 2월 22일	일반인	수급자
참여자	자활기업참여일	자활기업 (최초) 참여시점 수급유형	2014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유형																									
김**	2014년 1월 15일	수급자	일반인																									
정**	2013년 5월 10일	차상위	차상위																									
신**	2014년 4월 7일	수급자	일반인																									
박**	2014년 7월 1일	수급자	일반인																									
이**	2012년 2월 22일	일반인	수급자																									
비고	※ 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된 자활기업의 경우 폐업시점기준의 자활기업 참여자 중 자활기업 최초 참여시점의 취약계층 인원을 계산함																											
배점방식 (상대평가:2점)	0점	0%																										
	1점	하위50%																										
	2점	상위50%																										
Q/A	Q: 평가산식에 분모 분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어떠한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분자-사회복지급여통지서, 재직증명서(자활기업 입사일 반드시 표기) 분모-자활기업 요건충족 신고서류(반드시 자활기업 구성원 명단 및 수급유형 확인이 가능해야 함)																											

평가지표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자활기업의 추가고용 증가율을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3년(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의 자활기업																																																																										
평가내용	☐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자활기업의 추가 고용 증가율을 검토함으로 자활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전년대비 확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2014년 1월~12월 자활기업 참여자 급여대장(급여명세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함. ☐ 대체서류: ① 자활기업 참여자 고용계약서(월평균급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평가방법 (산식)	(14년 연평균 최저임금이상 참여자수/14년 자활기업 참여자수)*100 A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 2014년 자활기업 참여자 급여내역 (단위: 만원) <table><tr><td>참여자</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d>평균</td></tr><tr><td>홍**</td><td>200</td><td>1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200</td><td>191.6</td></tr><tr><td>임**</td><td>-</td><td>-</td><td>-</td><td>-</td><td>-</td><td>-</td><td>100</td><td>150</td><td>100</td><td>150</td><td>100</td><td>100</td><td>116.6</td></tr><tr><td>장**</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200</td><td>200</td></tr><tr><td>김**</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table> ➔ 정답: $\frac{3}{4} * 100 = 75\%$ 해설: 분모- 14년 자활기업 참여자수 4명 분자- 14년 연평균 최저임금이상 참여자수 3명(홍**,임**,장**) ※ 2014년 자활기업 참여자수는 ※ 한시적인건비지원 참여자는 한시적인건비 포함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자만 포함됨.					참여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홍**	200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1.6	임**	-	-	-	-	-	-	100	150	100	150	100	100	116.6	장**	-	-	-	-	-	-	-	-	-	-	-	200	200	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여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홍**	200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1.6																																																														
임**	-	-	-	-	-	-	100	150	100	150	100	100	116.6																																																														
장**	-	-	-	-	-	-	-	-	-	-	-	200	200																																																														
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고																																																																											
배점방식 (상대평가:2점)	0점	0																																																																									
	1점	하위 50%																																																																									
	2점	상위 50%																																																																									
Q/A																																																																											

평가지표	(참여자) 직무교육이수율	평가점수	4점
평가목표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직무) 실시여부 검토		
평가대상자	2014년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3년(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내 자활기업 참여자 중에서 2014년 급여를 1회이상 수령한 참여자 ※ 단,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30일(토,일포함)미만 참여자는 평가제외대상임.		
평가내용	☐ 직무교육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직무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및 자활기업과 연관된 교육 ☐ 직무교육 인정범위 ① 중앙/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가시간병교육센터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교육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③ 그 외 국가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④ 기관 자체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만 인정(외부전문강사 이력서 또는 프로필 첨부) ※ 단, 사업단 참여자: 직무교육 연 2회,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만 인정 ※ 단, 자활기업 참여자: 직무교육 연 1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만 인정 ☐ 직무교육 제외범위 ①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의 경우 제외 ② 단순한 정책소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용관리안내, 자활사업입문교육 등), 사업기준안내(취성패,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안내 등)은 제외 ③ 참여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없는 교육은 제외 ④ 근로의욕증진, 근골격계 예방교육, 심리관련교육(음악치료, 연극치료)등 제외 ⑤ 해당사업 평가회의, 해외연수 등 제외 ⑥ 견학프로그램에 대하여 서류 불충분(방문기관 내용 미첨부)할 경우는 제외 ⑦ 소양교육에 이중으로 입력한 경우 제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자격증, 수료증(선택제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함. ○ 대체서류: 참석확인공문(출석부첨부), 내부결재문서(출석부첨부) ※ 대체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출석부(자필서명)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증빙서류 필수포함사항 ①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는 반드시 외부전문강사 이력서나 프로필을 첨부해야 함 ② 자격증 및 수료증에는 교육참석일자 및 이수시간이 반드시 확인가능해야 함 ③ 출석부를 제출할 경우에는 참석확인공문 및 내부결재문서가 함께 증빙되어야 함 ④ 출석부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평가방법 (산식)	자활근로사업단 직무교육 연 2회,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 자활기업 참여자 직무교육 연 1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 / 직무교육이수율 평가대상자수 ※ 단,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이 180일 미만의 경우 참여자는 50%만 적용(연 1회 총 4시간이수)	
비고	※ 직무교육은 교육의 주관과 주최가 다른 교육일 때 1일 2회까지 인정가능 ※ 참여자 중 참여변동(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이력이 있는 경우 더 오랜기간 참여한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을 소속으로 계산	
배점방식 (절대평가:4점)	0점	0%
	1점	0%초과 ~ 70%미만
	2점	70%이상 ~ 85%미만
	3점	85%이상 ~ 95%미만
	4점	95%이상 ~
Q/A	Q: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 1일 참여한 참여자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u>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30일 이상(토,일포함) 참여자만</u> 교육이수 대상자입니다. Q: 같은 주제의 교육이 횟수가 나누어져서 실시되는 교육일 경우 횟수로 인정가능한가요? A: 네, 인정가능합니다. Q: 참여자가 사업단에 참여했던 기간과 교육기간이 일치해야 하나요? A: 네, 일치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참여자) 소양교육이수율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소양) 실시여부 검토		
평가대상자	2014년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참여한 참여자(실누계인원, 중복자 제외)중 급여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자, 3년(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내 자활기업 참여자 중에서 2014년 급여를 1회이상 수령한 참여자 <u>※ 단,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30일(토,일포함)미만 참여자는 평가제외대상임.</u>		
평가내용	☐ 소양교육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한 인문학교육, 자존감향상교육 등과 같이 직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교육을 모두포함 ☐ 소양교육 인정범위 ① 중앙/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가사간병교육센터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교육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③ 그 외 국가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④ 기관 자체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만 인정(외부전문강사 이력서 또는 프로필 첨부) ⑤ 온라인교육의 경우 50%만 인정 <u>※ 단, 사업단 참여자: 소양교육 연 4회,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만 인정</u> <u>※ 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양교육 연 2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만 인정</u> ☐ 소양교육 제외범위 ① 법정의무교육 모두 제외 ② 단순지자체 및 법인행사(체육대회, 단합대회)는 제외 ③ 교육이 없는 단순방문 프로그램 형식(제주도 방문 등)은 제외 ④ 직무교육에 이중으로 입력한 경우 제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자격증, 수료증(선택제출) <u>※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가능함</u> ○ 대체서류: 참석확인공문(출석부첨부), 내부결재문서(출석부첨부) <u>※ 대체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출석부(자필서명)를 반드시 첨부할 것</u> ☐ 증빙서류 필수포함사항 ①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는 반드시 외부전문강사 이력서나 프로필을 첨부해야 함 ② 자격증 및 수료증에는 교육참석일자 및 이수시간이 반드시 확인가능해야 함 ③ 출석부를 제출할 경우에는 참석확인공문 및 내부결재문서가 함께 증빙되어야 함 ④ 출석부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평가방법 (산식)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소양교육 연 4회,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양교육 연 2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 소양교육이수율 평가대상자수 <u>※ 단, 참여기간이 180일 미만의 경우 참여자는 50%만 적용(연 2회 총 4시간이수)</u>		
비고	※ 소양교육은 교육의 주관과 주최가 다른 교육일 때 1일 2회까지 인정가능 ※ 참여자 중 참여변동(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이력이 있는 경우 더 오랜기간 참여한 자활근로		

	사업단 or 자활기업을 소속으로 계산	
배점방식 (절대평가:3점)	0점	0%
	1점	0%초과 ~ 70%미만
	2점	70%이상 ~ 90%미만
	3점	90%이상
Q/A	Q: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 1일 참여한 참여자도 소양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u>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30일(토,일포함)이상</u> 참여자만 교육이수 대상자입니다. Q: 같은 주제의 교육이 횟수가 나누어져서 실시되는 교육일 경우 횟수로 인정가능한가요? A: 네, 인정가능합니다. Q: 참여자가 사업단에 참여했던 기간과 교육기간이 일치해야 하나요? A: 네, 일치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사례회의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참여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사정 및 서비스 개입계획, 제공 여부검토		
평가대상자	자활근로사업단(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회의		
평가내용	□ 사례회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센터장, 전담관리자, 실장 및 담당 실무자 등(종사자 3인이상 포함)으로 구성된 사례회의만 인정함 ※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여도 종사자 인원으로 인정되며, 0.5 가산점부여하나, 단, 내부종사자 1인 이상 포함된 3인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센터장 내부결재공문(결과보고) ② 사례관리일지 ③ (해당사례회의건) 외부전문가 이력서, 프로필 □ 증빙서류 필수포함사항 ① 센터장 내부결재공문(결과보고)을 반드시 첨부 ② 사례회의 일지에는 회의일시, 회의참가자, 회의주제, 대상자의 사정 및 서비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는 외부전문가 이력서, 프로필을 제출하여야 함		
평가방법 (산식)	사례회의건수+(외부전문가 참석 사례회의건*0.5) ※ 단, 사례회의건수는 1일 1건으로 한정함. ※ 단, 외부전문가 참석 사례회의건은 0.5배 가산점 부여		
비고	※ 외부전문가: 해당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아닌 지역전문가		
배점방식 (절대평가:3점)	0점	0건	
	1점	1건이상~12건미만	
	2점	12건이상~24건미만	
	3점	24건이상~	
Q/A	Q: Gateway과정에 참여자의 사업단 배정을 위해 이루어진 사례회의는 사례회의 개최율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5 센터 운영

평가지표	종사자 직무교육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종사자의 대상은 2014년 근무일수가 90일이상(3개월) 근무한자로 센터장,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전담관리자,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사례관리 전담관리자,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전담관리자 ※ 종사자 입·퇴자사 발생시 교육이수시간이 신규종사자로 승계되지 않음 ※ 종사자가 평가기간 동안 임신, 병가 등의 휴직은 근무기간에서 제외됨 ※ 순환보직자의 경우 순환보직기간 제외			
평가내용	☐ 직무교육 지역자활센터 직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 직무교육 인정범위 ① 중앙/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부, 가사간병교육센터가 주최하거나 주관한 교육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교육 ③ 그 외 국가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④ 기관 자체교육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만 인정(외부전문강사 이력서 또는 프로필 첨부) ⑤ 유·무료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 ☐ 직무교육 제외범위 ① 법정 의무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운영상황 등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제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진행된 특화교육 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은 제외됨) ② 지자체 보조사업자 의무교육, 조직 관리 참여자 의무교육 제외 ③ 회의 및 간담회, 해외연수 등은 제외 ④ 대학학위과정, 책을 우편으로 받아서 사이버시험 후 수료하는 교육 등 제외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수료증, 참석확인 공문 등(참석자 이름,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함)			
평가방법 (산식)	총 40시간 이상 교육이수 종사자수/종사자 직무교육 평가대상자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2점)	0점	0%		
	1점	0%초과~80%미만		
	2점	80%이상		
Q/A	Q: 센터장님이 공무원으로 경직을 할 경우 공무원교육도 인정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평가지표	종사자 복지지원(복리후생)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센터 종사자의 다양한 복지지원(복리후생)을 통하여 직장생활 만족 및 향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센터장,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전담관리자,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사례관리전담관리자,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전담관리자			
평가내용	☐ 복리후생의 범위 ① 외부전문 연수, 학회, 공청회 등 의 참여 ② 외부후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금전적 지원 ③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 예산 지원확보를 통한 개선 ☐ 종사자 복지지원(복리후생) ① 복리후생(포상제도) 규정을 갖추고 있다. ② 복리후생(포상제도)을 지원한 경우가 있다. ③ 복리후생(포상제도)을 지원한 금액이 있다.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복리후생(포상제도) 규정 ② 복리후생(포상제도)를 지원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내부, 외부 결과공문) ③ 복리후생(포상제도)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내부, 외부 결과공문)			
평가방법 (산식)	종사자 복지지원(복리후생)에 대한 3가지 평가내용 달성여부로 점수부여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2점)	0점	달성 항목 없음		
	1점	1가지 항목 달성~2가지 항목 달성		
	2점	3가지 항목 달성		
Q/A	Q: 종사자 복지지원(복리후생) 3가지 항목 중 포상제도만 3건을 달성한 경우는 몇 점인가요? A: 3가지 항목을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라 1가지 항목만 3건 달성한 경우는 1점에 해당됩니다. Q: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간 연수도 복리후생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	홍보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지역사회주민에게 센터 및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에 대하여 2014년에 이루어진 홍보		
평가내용	□ 홍보 ① 언론홍보: 방송, 신문, 잡지 등에 해당하며 이를 스크랩하여 제출한 자료 ※ 같은 주제의 동일행사에 대하여 언론홍보의 경우 다건으로 인정함 ② 홍보자료: - 소식지, 웹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식지나 웹진 발간하였을 경우 인정 - 홍보물(리플렛, 가이드북): 평가대상기간동안에 연 1회 이상 제작하였을 경우 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모두제출) ○ 필수서류 ① 언론홍보: 방송, 신문, 잡지 등의 스크랩자료 ② 홍보자료: - 소식지, 웹진, 홍보물: 결과보고서(계획보고서는 인정안됨) ※ 모든 홍보자료는 2014년에 홍보 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평가방법 (산식)	언론홍보건수에 대한 점수+ 홍보자료에 달성여부에 대한 점수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2점)	0점	0건	
	1점	언론홍보 1건이상~10건미만 + 홍보자료 1건	
	2점	언론홍보 10건이상~ + 홍보자료 2건	
Q/A	Q: 홍보자료는 소식지, 웹진 또는 홍보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경우 누적 건이 인정 되는 것인가요? A: 네, 인정 가능합니다. ex) 소식지를 1년에 2번 만들어도 홍보자료 2건으로 인정이 가능함.		

평가지표	종사자 근속년수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종사자의 근속률을 통해 센터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센터장, 기관운영비를 통해 지원되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희망키움통장전담관리자, Gateway사업단 전담관리자, 사례관리전담관리자,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의 전담관리자 ※ 임신(출산,육아휴직), 병가로 인한 휴직자도 모두 포함 ※ 평가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종사자는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 12개월분에 사유를 표기하고 센터장 도장 날인 후 제출		
평가내용	□ 종사자 근속년수 ① 2014년 종사자의 근속비율로 2014년 종사자수(1일이상 근무자)대비 2014년 종사자 총근속일(주말휴일포함)수임 ② 법인내 순환보직으로 지역자활센터내에 발령되어 근무하였을 경우 법인내 근무기간을 지역자활센터 계속근무로 인정 ③ 출산휴가(3개월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평가에서 제외됨 ④ 인사이동(ex. 계약직⇒정규직)의 경우 휴일이 없을 경우 계속근무로 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12개월분 ※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서는 해당지역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EDI서비스(http://edi.nhis.or.kr)를 통해서 발급 가능함 ② 인사원칙증빙서류(순환보직 해당자만 첨부)		
평가방법 (산식)	$\frac{2014년종사자총근속일수(주말휴일포함)}{2014년종사자수(1일이상근무자)}$		
비고			
배점방식 (상대평가:2점)	0점	0%	
	1점	하위 70%미만~	
	2점	상위 30%이상~	
Q/A			

평가지표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작성		평가점수	3점
평가내용	지역자활센터의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투명서 확보를 위한 서류제출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① 2014년 자활사업 추진현황 작성 후 평가서류와 함께 제본 후 제출 ② 2014년 자활사업 추진현황 작성 후(엑셀) 메일(sparrow20@cssf.or.kr)로 제출 ※ 엑셀파일은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소통마당 커뮤니티에서 다운 가능함.			
평가방법 (산식)	양식에 의거한 서류제출(제본, 메일)			
배점방식 (절대평가:3점)	0점	미제출		
	2점	미흡제출		
	3점	완성제출		
비고	※ 201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부터는 추진현황을 미흡하게 제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점을 배점함.			

평가지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보고	평가점수	3점
평가내용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시군구 보고에 대한 예산의 확립에 대한 서류 제출		
증빙서류	내부공문		
평가방법 (산식)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에 대한 내부공문 자료 제출 ※ 운영지원위원회의 심의기구를 대신하는 이사회 보고 자료. 예·결산자료도 인정가능		
배점방식 (절대평가:3점)	0점	미제출	
	3점	제출	

6

외부지원 후원

평가지표	후원실적		평가점수	2점
평가목표	재정적 후원, 물품후원을 얼마나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평가내용	☐ 후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물품 ☐ 후원금(품)의 종류 ①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②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③ 결연후원금품: 아동·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④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⑤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⑥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⑦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⑧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① 개인 ② 영리법인: 기업 ③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④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⑤ 국가기관: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⑥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⑦ 소관법인: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양식-2]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② [양식-2] 관련 증빙서류(후원관련 공문, 후원관련 서류확인서 등)			
평가방법 (산식)	외부자원후원(물품)건수&후원금액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2점)	0점	후원금액 50만원 미만, 후원(물품)건수 5건미만		
	1점	후원금액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 후원(물품)건수 5건이상~10건미만		
	2점	후원금액 100만원이상~ + 후원(물품)건수 10건이상~		
Q/A	Q: 후원금액이 50만원이고 후원물품건수가 4건이면 몇 점인가요? A: 0점입니다. 후원금액과 후원(물품)건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당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이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평가내용	☐ 지역의 사회적 공헌의 범위 ① 지역행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주최 및 주관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또는 자활기업참여자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예: 바자회, 캠프 등) ② 자원봉사활동: 지역의 유관기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기업 참여자가 제공한 다양한 봉사활동 ③ 물품 및 금품 후원: 지역의 유관기관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이 제공한 물품 및 금품후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개인 및 자활기업참여자 개인의 후원건은 불인정) ☐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① 지역행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② 자원봉사활동: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③ 물품 및 금품 후원: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위한 물품 및 후원활동을 실시하였다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결과보고 공문		
평가방법 (산식)	지역의 사회적 공헌건수에 대한 3가지 항목 평가내용 달성여부로 점수부여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3점)	0점	달성 항목 없음	
	1점	1가지 항목 달성	
	2점	2가지 항목 달성	
	3점	3가지 항목 달성	
Q/A	Q: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3가지 항목 중 지역행사만 3건을 달성한 경우는 몇 점인가요? A: 3가지 항목을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라 1가지 항목만 3건 달성한 경우는 1점에 해당됩니다.		

평가지표	민간(기업, 단체 등)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건수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나 사업단, 자활기업이 민간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얼마나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자활기업(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에 위탁		
평가내용	☐ 민간 위탁사업의 범위 ○ 영리법인: 기업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인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 민간 위탁사업건수(공모, 또는 위탁일 기준) 민간기관이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 자활기업(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된 자활기업)에게 위탁한 사업건수		
증빙서류	☐ 증빙서류(선택제출) ① 공모지원서류 ② 채택공문 ③ 위탁공문		
평가방법 (산식)	외부공모 및 위탁사업건수+(공모를 통한 채택건*0.5).		
비고	※ 기준일: α 공모를 통한 채택건의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2014년 공모한 사업을 기준으로 채택시점이 평가 이전 서류제출이 가능할 경우를 인정가능함 α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에 공모 또는 위탁받은사업, 2014년에 실시하는 사업		
배점방식 (절대평가:3점)	0점	0건	
	1점	1건 이상 ~ 6건 미만	
	2점	6건 이상 ~ 12건 미만	
	3점	12건 이상	
Q/A	Q: 민간단체로부터 2013년 11월에 공모를 하여 위탁을 받은 사업인데 2014년 1월부터 실시한 사업일 경우 성과에 해당이 되나요? A: 네, 인정가능합니다. 즉,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에 공모 또는 위탁을 받거나 또는 실시한 사업이면 성과로 인정 가능합니다.		

평가지표	사업적 혁신성		평가점수	4점
평가목표	2014년에 신규사업단으로 새로운 사업단을 기획하여 실행하는 것을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파일럿사업단이 본사업화 된 사업단			
평가내용	☐ 사업적 혁신성 2014년 신규사업으로 인정된 건수로 신규사업, 파일럿 사업이 본 사업화된 경우, 제안 후 채택된 사업을 검토하고자 함 ☐ 사업적 혁신성 인정범위 ○ 파일럿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본 사업단으로 설치된 경우 ○ 2014년 신규사업건수 ※단, 사업단의 분리, 병합, 명칭변경, 사업 아이템 추가는 신규사업으로 인정불가능 ○ 제안후 채택된 사업 - 복지부 공모, 광역·지역 특화형 채택건수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양식-3] 에 의거한 서류를 작성하되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 서명후 제출			
평가방법 (산식)	14년 신규사업건수/14년 전체사업건수			
비고				
배점방식 (상대평가:4점)	0점	0%		
	1점	상위 75%미만 ~ 100%이상		
	2점	상위 50%미만 ~ 75%이상		
	3점	상위 25%미만 ~ 50%이상		
	4점	상위 25%이상 ~		
Q/A	Q: 사회적일자리형 사업단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된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평가지표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율	평가점수	4점
평가목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참여자 이외의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의 자활사업 미참여 취약계층으로 차상위, 특례, 게이트웨이(Gateway)30일미만 참여자 ※ 일반인은 제외		
평가내용	☐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 해당 지역 취약계층 (특수계층 포함)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타 복지서비스연계 제공의 비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모두제출) ① 사례관리자료 - 사례관리자료에는 <u>대상자의 수급유형, 인적사항, 사정과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 제공, 사례관리일자</u>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취업성공자 - 2014년 취업을 확인 할 수 문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취업기간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고용보험 득실확인서) ※ 필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함. ☐ 취업성공자 대체서류: [양식-1] 양식에 의거한 서류를 작성하되,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명시할 것		
평가방법 (산식)	(지역자활센터 복지연계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건수+취업성공건수*0.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 * 종사자수는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직무교육 대상자 수 ※ 일자리 제공의 결과 취업을 성공하였을 경우 0.5배 가중치 부여		
비고			
배점방식 (상대평가:4점)	0점	0%	
	1점	상위 75%미만 ~ 100%이상	
	2점	상위 50%미만 ~ 75%이상	
	3점	상위 25%미만 ~ 50%이상	
	4점	상위 25%이상 ~	
Q/A			

평가지표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평가점수	3점
평가목표	센터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대상자	지역자활센터			
평가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의 참여자 및 센터운영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단체와의 네트워크하여 협력을 하고 있는지 검토 ☐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인정불가능한 건 ① 지역자활센터와 자활내부의 기관(타지역자활센터, 광역, 중앙자활센터, 협회, 지부 등) 과의 네트워크건은 불인정 ⑤ 단순행사참석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건으로 불인정			
증빙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업무협약서, 양해각서 등 ※ 2014년에 진행된 건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 만일 사업의 특성상 계속사업의 특성을 지닌 경우 업무협약서나 양해각서에 지속적인 협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 가능 할 경우만 당해연도 실적으로 인정			
평가방법 (산식)	네트워크 건수			
비고				
배점방식 (절대평가:3점)	0점	0건		
	1점	1건 이상~5건 미만		
	2점	5건 이상~10건 미만		
	3점	10건 이상~		
Q/A				

4. 부 록

[양식 1] 취업 확인서 양식

성명			
성별	남() / 여()	연령	만()세
주소			
취업처명		업종	
업체주소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업체규모(근무자수) :		
월급여	()만원	취업일자	
		퇴직일자	
주당근무시간	주()시간 근무시간 :		
4대보험 가입여부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 국민연금 ☐ 고용보험(*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산재보험		
확인자 성명		확인자 전화번호 (H.P)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용 도 : 기관제출용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확인방법? 취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전화로 확인가능함

[양식 2] 후원금수입 및 지출결과보고서

☐ 수입

1. 후원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일자	후원품종류	후원자 구분	내역	품명	수량/단위	상당 금액	비고

☐ 지출

3. 후원금 지출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 구분	지출내역	금액	비고

4. 후원금품 지출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후원금품종류	후원자 구분	지출내역	상당금액	비고

[양식 3] 13년 14년 사업단수

☐ 2013년 사업

사업단별		설립일	주요업무
유형	사업단명		
시범(Pilot)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 2014년 사업 (※단, 사업단의 분리, 병합, 명칭변경, 사업 아이템 추가는 신규사업으로 인정불가능)

사업단별		14년	설립일	주요업무
유형	사업단명	신규사업의 경우 체크		
시범(Pilot)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 작성자 서명

구분	직책	성명	확인
(센터명)			
(지자체명)			

[양식 4] 재무회계 투명성 :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양식

(본 양식은 지역자활센터 재무회계 점검 양식과 동일하고, 향후 센터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년 자활사업 추진 현황

2014년

○○ 지역자활센터

1. 일반현황

1. 센터 개요

센터명		센터장	
규모		설립일	
모법인		대 표	
소재지		전화번호	

2.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원 현황			비고
	계	정규직	계약직 등	
계				
센터 운영 (규모별 자원)				
사례관리자 (Gateway, 희망키움통장, 자활사례관리)				
기타				

3.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사업명	참여자 현황			
	계	수급자	차상위자	기타
계				
자활근로				
Gateway				
자활공동체				
희망키움통장				
기타				

4. 자활근로사업단 및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사업단명	유형	설립일	참여자 현황			
			계	수급자	차상위자	기타
계	—	—				
○○사업단	시장진입형					
○○사업단	...					
○○사업단	...					
○○사업단	...					
.....						

5. 자활기업(자활공동체) 현황

(단위 : 명)

자활기업명		설립일	참여자 현황			
			계	수급자	차상위자	기타
계		—				
'11년 이후 설립	소계					
	○○기업					
	○○기업					
	○○기업					
						
'11년 이전 설립	소계					
	○○기업					
	○○기업					
	○○기업					
						

※ 최근에 설립된 자활기업 순서로 기재

6.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2014년						
		소계	1기 (3월)	2기 (6월)	3기 (8월)	4기 (9월)	5기 (10월)	6기 (11월)
가입가구(㉠)								
해지 가구 (㉡)	중도해지							
	특별중도							
전출입 가구 (㉢)	전입							
	전출							
유지가구 (㉠-㉡±㉢)								

7.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현황

구분		2014년								
		소계	1기 (3월)	2기 (4월)	3기 (5월)	4기 (6월)	5기 (7월)	6기 (8월)	7기 (9월)	8기 (10월)
가입가구(㉠)										
해지 가구 (㉡)	중도해지									
	특별중도									
전출입 가구 (㉢)	전입									
	전출									
유지가구 (㉠-㉡±㉢)										

8. 자활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명)

연도	사업 유형	참여자 수			자활성과				비고
		계	수급자	차상위자 등	계	탈수급	수급 유지		
							취업	창업	
2011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2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3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4년	계								
	자활근로								
	Gateway								

9. 탈수급자 유형 분류

(단위 : 명)

연도	사업 유형	계	취업	창업	기타	자활특례
2011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2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3년	계					
	자활근로					
	자활인큐베이팅					
2014년	계					
	자활근로					
	Gateway					

II. 재무회계관리

총괄	'14년 센터 전체 수입지출 현황
-----------	---------------------------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총 계 (A =B+C)				
자 활 사 업 (B)	소 계			
	1.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수입지출 현황			
	2. 자활근로사업(전체) 수입지출 현황			
	2-1.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전체) 수입지출 현황			
	2-1-1. ○○사업단(시장진입형) 수입지출 현황			
				
	2-2.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전체) 수입지출 현황			
	2-2-1. ○○사업단(사회서비스형) 수입지출 현황			
				
	3. Gateway 수입지출 현황			
	4.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5. 자활사례관리			
자 활 사 업 외 (C)	소 계			
	6.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계)			
	6-1. 가사간병서비스			
				
	7. 노인장기요양보험			
	8. 기타 사업(계) ¹⁾			
	8-1. ○○사업			
				

1) 기타 사업 : 위 1~6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센터에서 수행하는 다른 모든 사업
(예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1 '14년 센터 운영비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기본급(W1)			
			각종수당(W2)					
			사회보험료(W3)					
	지방비 (G2)	소계(G2)		총 사업비 (B)	사업비 (C)	소계 (C=C1+C2+C3+C4+C5)		
		시도비				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차료(C1)		
							공과금(C2)	
기타 (E)	추가지원					업무추진비(C3)		
			교육훈련비(C4)					
			기타(C5)					
			기타(K)	집행 잔액				

1) 센터 종사자 수 : 명

- 센터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근무 5명, 6개월 근무 1명일 경우 종사자 수를 5.5명으로 기재

산출내역 : 5명 × 12 / 12개월 + 1명 × 6 / 12개월 = 5.5명)

2) 각종 수당 :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3) 공과금 : 우편통신비 및 각종 세금

4) 업무추진비 :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비용, 교통 여비 등

2

'14년 자활근로사업 전체 수입지출 현황

※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수입·지출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⑫+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⑫=④+⑩+⑪)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⑫	인건비 ④	소계 (④=①+②+③)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②			
			사회보험료③						
			시도비			사업비 ⑩	소계(⑩=⑤+⑥+⑦+⑧+⑨)		
		시군구비			직접사업비⑤				
기타(4)	추가지원				시설장비 임대료⑥				
			공과금⑦						
			업무추진비⑧						
			기타⑨						
			기타⑪	집행 잔액					
당해년('○○년)매출액(8)				당해년 매출총지출(e=a+b+c+d)					
				당해년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당해년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당해년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매출적립금·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 입				지 출				비고
	자활기업창업자금	이월액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이월액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실 참여자 수(누계)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50명 × 12/12월 + 30명 × 10/12월 + 10명 × 6/12월 = 80명)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2-1

'14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전체 수입·지출 현황

※ 전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수입·지출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⑫+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⑫=④+⑩+⑪)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⑫	인건비 ④	소계 (④=①+②+③)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각종수당②						
	소계(2)		사회보험료③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4)	추가지원			사업비 ⑩	소계(⑩=⑤+⑥+⑦+⑧+⑨)			
		직접사업비⑤							
		시설·장비 임대료⑥							
		공과금⑦							
					업무추진비⑧				
					기타⑨				
				기타⑪	집행 잔액				
당해년('〇〇년)매출액(8)				당해년 매출총지출(e=a+b+c+d)					
				당해년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당해년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당해년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매출적립금·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수 입				지 출				비고
	자활기업창업자금	소계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이월액				누적 잔액		
		적립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	자립성과금	이월액		수익금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이월액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㉔+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㉔=㉑+㉒+㉓)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㉔	인건비 ㉑	소계 (㉑=㉑+㉒+㉓)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②		
						사회보험료③		
		시도비			사업비 ㉒	소계(㉒=㉑+㉒+㉓+㉔+㉕)		
						직접사업비⑤		
			시설·장비 임대료⑥					
			공과금⑦					
			업무추진비⑧					
기타(4)	추가지원					기타⑨		
				기타㉓	집행 잔액			
당해년('〇〇년)매출액(8)				당해년 매출총지출(e=a+b+c+d)				
				당해년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당해년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당해년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매출적립금·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수 입				지 출				비고
	자활기업창업자금	소계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이월액				누적 잔액		
		적립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50명 × 12/12월 + 30명 × 10/12월 + 10명 × 6/12월 = 80명)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2-2

'14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전체 수입·지출 현황

※ 전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수입·지출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12+e+f)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12=4+10+11)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12	인건비 4	소계 (4=1+2+3)		
	국비(1)		급여액1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2		
						사회보험료3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비 10	소계(10=5+6+7+8+9)		
기타(4)	추가지원		직접사업비5					
			시설·장비 임대료6					
			공과금7					
			업무추진비8					
			기타9					
			집행 잔액					
당해년('〇〇년)매출액(8)			당해년 매출총지출(e=a+b+c+d)					
			당해년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당해년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당해년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지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매출적립금·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 입				지 출				비고
	자활기업창업자금	이월액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50명 × 12/12월 + 30명 × 10/12월 + 10명 × 6/12월 = 80명)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6)+(8)+(9)				총계 (⑫+㉔+㉕)				
총사업지원(6)=(4)+(5)				총사업비(⑫=④+⑩+⑪)				
정부 지원(5)	소계(3=1+2)			총사업비 ⑫	인건비 ④	소계 (④=①+②+③)		
	국비(1)					급여액①		
	지방비 (2)	소계(2)				각종수당②		
						사회보험료③		
					소계(⑩=⑤+⑥+⑦+⑧+⑨)			
					직접사업비⑤			
기타(4)	추가지원				사업비 ⑩	시설·장비 임대료⑥		
			공과금⑦					
			업무추진비⑧					
			기타⑨					
			집행 잔액					
당해년('〇〇년)매출액(8)				당해년 매출총지출(e=a+b+c+d)				
			당해년 매출액 지출(a=a1+a2)					
			직접사업비(a1)					
			초과·휴일근무 수당(a2)					
			당해년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b)					
			당해년 매출적립금으로 사용 (c=c1+c2)					
			자활기업창업자금 (c1)					
			활성화지원금(c2)					
			수익금으로 적립(d=d1+d2+d3)					
			내일키움수익금(d1)					
자립성과금(d2)								
수익금사용잉여금(d3)								
(매출적립금·수익금) 이월액 및 수입총계(9)			(매출적립금·수익금) 지출액 및 잔액총계(f)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이월액		매출 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자활기업창업자금	이월액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활성화지원금	이월액			활성화지원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 입				지 출				비고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월액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자립성과금	이월액			자립성과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수익금사용잉여금	이월액			수익금사용잉여금	지출액		
		적립액				누적 잔액		
		소계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2개월 참여 50명, 10개월 참여 30명, 6개월 참여 10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80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50명 × 12/12월 + 30명 × 10/12월 + 10명 × 6/12월 = 80명)

2) 각종 수당 : 실비, 전담관리자 수당 (기술·자격자 수당은 급여액에 포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계 (T=G+E+M)				총계 (T=B+M)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급여액(W1)			
	지방비 (G2)	소계(G2)		각종수당(W2)			
		사도비		사회보험료(W3)			
		시군구비	사업비 (C)	소계(C=C1+C2+C3+C4+C5)			
	교육훈련 장소 임대료(C1)						
공과금(C2)							
교육훈련비(C3)							
업무추진비(C4)							
기타 (E)	추가지원 등		기타(C5)				
			기타(K)		집행 잔액		

※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은 사업단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을 할 수 없고, 사업단 운영에 따른 매출액도 발생할 수 없음

※ 잘못된 사업 운영으로 수입에 매출액이 발생하거나 차량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수입·지출의 '기타'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하단에 지출 내역을 설명

1) 참여자 수 : 명

- 실제 참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3개월 기준)

(예 : 3개월 참여 10명, 2개월 참여 5명, 1개월 참여 5명일 경우 참여자 수를 15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0명 × 3/3월 + 5명 × 2/3월 + 5명 × 1/3월 = 15명)

4

'14년 자활기업지원 수입지출 현황

※ 자활근로예산에서 자활기업에 지원한 인건비 내역 기재

- 매출적립금(자활공동체 초기창업자금)은 해당되지 않음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총 사업비 (B)	한시적 인건비 (W)		
	국비(G1)					
	지방비 (G2)	소계(G2)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E)	추가지원			기타(K)		

1) 지원한 자활기업(공동체) 수 : 개

2) 인건비 지원 사람 수 : 명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총사업 비 (B)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지방비 (G2)	소계(G2)			급여액(W1)	
		시도비			각종수당(W2)	
		시군구비			사회보험료(W3)	
기타 (E)	추가지원		기타(K)	집행 잔액		

1) 자활사례관리자 수 : 명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사례관리자가 10개월 근무시 자활사례관리자수를 0.83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0/12월 × 1명 = 0.83명)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도우미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급여액(W1)		
					각종수당(W2)		
	소계(G2)				사회보험료(W3)		
	지방비 (G2)	시도비			소계(C=C1+C2+C3+C4+C5+C6)		
					행정직원 인건비(C1)		
		시군구비			시설장바차량 구입 및 임대료(C2)		
기타 (E)	계			사업비 (C)	공과금(C3)		
	전년도 수익금 이월액				교육훈련비(C4)		
	수혜자 부담액				업무추진비(C5)		
					기타(C6)		
	추가지원			기타(K)	집행잔액(수익금) 등		

1) 도우미 수 : 명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12개월 근무 5명, 6개월 근무 1명이 있을 경우 도우미수를 5.5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2/12월 × 5명 + 6/12월 × 1명 = 5.5명)

5-1 '14년 가시간병서비스 바우처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도우미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급여액(W1)		
					각종수당(W2)		
					사회보험료(W3)		
	지방비 (G2)	소계(G2)		총사업 비 (B)	소계(C=C1+C2+C3+C4+C5+C6)		
		시도비			행정직원 인건비(C1)		
		시군구비			시설장바차량 구입 및 임대료(C2)		
기타 (E)	계		사업비 (C)		공과금(C3)		
	전년도 수익금 이월액				교육훈련비(C4)		
	수혜자 부담액				업무추진비(C5)		
					기타(C6)		
	추가지원		기타(K)		집행잔액(수익금) 등		

1) 도우미 수 : 명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12개월 근무 5명, 6개월 근무 1명이 있을 경우 도우미수를 5.5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2/12월 × 5명 + 6/12월 × 1명 = 5.5명)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도우미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급여액(W1)			
					각종수당(W2)			
					사회보험료(W3)			
	지방비 (G2)	소계(G2)		총사업 비 (B)	사업비 (C)	소계(C=C1+C2+C3+C4+C5+C6)		
		시도비				행정직원 인건비(C1)		
		시군구비				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대료(C2)		
기타 (E)	계					공과금(C3)		
	전년도 수익금 이월액					교육훈련비(C4)		
	수혜자 부담액					업무추진비(C5)		
						기타(C6)		
추가지원			기타(K)	집행잔액(수익금) 등				

1) 도우미 수 : 명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12개월 근무 5명, 6개월 근무 1명이 있을 경우 도우미수를 5.5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2/12월 \times 5명 + 6/12월 \times 1명 = 5.5명$)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도우미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급여액(W1)			
					각종수당(W2)			
					사회보험료(W3)			
	지방비 (G2)	소계(G2)		총사업 비 (B)	사업비 (C)	소계(C=C1+C2+C3+C4+C5+C6)		
		시도비				행정직원 인건비(C1)		
		시군구비				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대료(C2)		
계			공과금(C3)					
전년도 수익금 이월액			교육훈련비(C4)					
수혜자 부담액			업무추진비(C5)					
			기타(C6)					
기타 (E)	추가지원				기타(K)	집행잔액(수익금) 등		

1) ○○사업 종사자 수 : 명

※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0개월 근무시 종사자 수를 0.83명으로 기재)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고	
총사업지원(G+E)				총사업비(B=W+C+K)				
정부 지원 (G)	소계(G=G1+G2)			도우미 인건비 (W)	소계 (W=W1+W2+W3)			
	국비(G1)				급여액(W1)			
					각종수당(W2)			
					사회보험료(W3)			
	지방비 (G2)	소계(G2)		총사업 비 (B)	사업비 (C)	소계(C=C1+C2+C3+C4+C5+C6)		
		시도비				행정직원 인건비(C1)		
		시군구비				시설장비차량 구입 및 임대료(C2)		
기타 (E)	계					공과금(C3)		
	전년도 수익금 이월액					교육훈련비(C4)		
	수혜자 부담액					업무추진비(C5)		
						기타(C6)		
추가지원			기타(K)	집행잔액(수익금) 등				

1) ○○사업 종사자 수 : 명

※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 10개월 근무시 종사자 수를 0.83명으로 기재 산출근거 : 10/12월 × 1명 = 0.83명)

III. 자산 현황

총괄	'14년 센터 자산 총괄
-----------	----------------------

연번	자산 종류	소유자명	수량(or 면적)	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					

※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센터, 센터장 명의의 자산은 모두 기재

※ 자산종류 : 부동산(토지, 건물), 전세자금 등 임대료, 차량 등

1	'14년 차량 현황
----------	-------------------

연번	차종	소유자명	평가금액	사용 용도	비고
1					
2					
3					
4					
5					
6					
.....					

1-1	전년 대비 증가한 차량
------------	---------------------

연번	차종	소유자명	평가금액	사용 용도	비고
1					
2					
3					

1-2	전년 대비 감소한 차량
------------	---------------------

연번	차종	소유자명	평가금액	사용 용도	비고
1					
2					
3					

2

'14년 현금성 유동자산 현황

※ 센터 사무실 및 사업장 임대를 위한 전세자금 등

연번	유동자산 용도	소유(계약)자명	금 액	비고
1				
2				
3				
4				
5				
6				
.....				

2-1

전년 대비 증가한 현금성 유동자산

연번	유동자산 용도	소유(계약)자명	평가금액	비고
1				
2				
3				

2-2

전년 대비 감소한 현금성 유동자산

연번	유동자산 용도	소유(계약)자명	평가금액	비고
1				
2				
3				

3	'14년 부동산 현황
----------	--------------------

연번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명	평가액	용도	비고
1							
2							
3							
4							
5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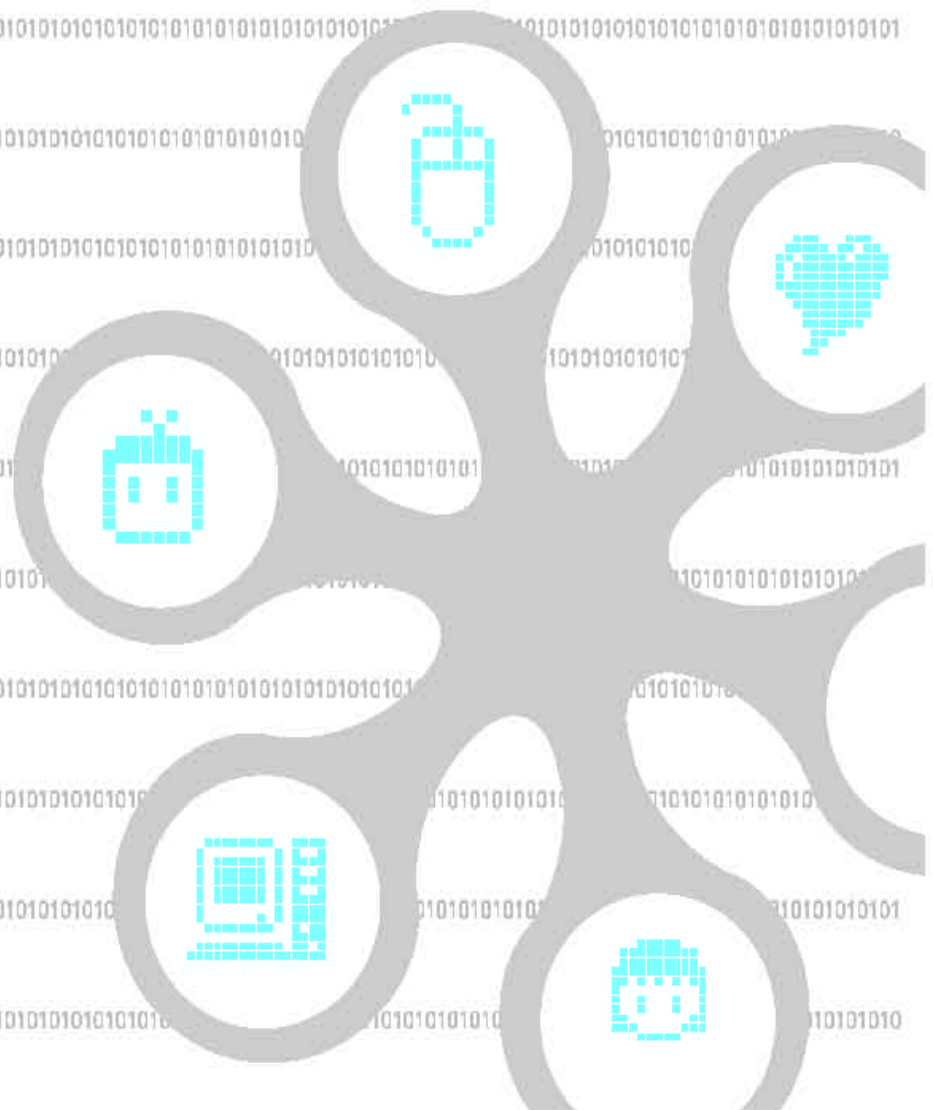
3-1	전년 대비 증가한 부동산
------------	----------------------

연번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명	평가액	용도	비고
1							
2							
3							

3-2	전년 대비 감소한 부동산
------------	----------------------

연번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소유자명	평가액	용도	비고
1							
2							
3							

2014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항목 안내



<참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 연계범위

평가지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	관련메뉴	
공통 지표	① 자활 성과	자활 성공률	취창업율		X		
			탈수급률		X		
		취업 유지율	3개월 유지율		X		
			6개월 유지율		X		
	② 사업단 운영	시장 진입형 사업단	1인당 연평균 수익금		O	「수입결의서」	
			1인당 월평균 매출액		O	「수입결의서」	
		사회 서비스 사업단	비수익형	만족도 조사	O	「서비스수혜자」	
			수익형	1인당 연평균 수익금		O	「수입결의서」
				1인당 월평균 매출액		O	「수입결의서」
		참여자 인사 본향상 지원	전문자격증 취득비율		X		
			민간자격증 취득비율		X		
			상위학력 취득비율		X		
	③ 자활 기업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O	「근무기록적용장(공동체)」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X		
		자활기업 일자리 증가율			X		
	④ 참여자 관리	직무교육 이수율			O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유형 · 직무교육 : 교육 · 소양교육 : 워크숍 기타 · 사례회의 : 회의	
		소양교육 이수율			O		
		사례회의 개최			O		
	⑤ 센터 운영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O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유형 : 교육	
		종사자 복지지원			X		
		홍보건수			X		
		종사자 근속년수			O	「인사카드관리」	
		재무 회계 투명성	통합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X		
			운영지원위원회 심의 및 시군구 보고		X		
특 성 화 지표	⑥외부자원후원	외부기관 후원연계 건수			X		
		지역의 사회적공헌 건수			X		
	⑦지역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공공 위탁사업 건수			X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 공모 및 위탁사업 건수			X		
		지역자활센터 사업적 혁신성			X		
	⑧지역일자리 연계 및 특화사업	지역의 취약계층 자립기여			X		
		사회적 경제 관련 네트워크 건수			X		

1. 공통

(1) 참여자등록

○ [이력정보] > [참여자관리] > [기본사항]

- 참여자의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탁의뢰일, 참여일, 보장구분

1. 공통

(2) 사업단등록

○ [이력정보] > [사업단관리] > [사업단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경리 관리 세무 고객관리 이력정보 시군구보고 시설관리

국가복지자활센터(테스트) [E0954] 김유선님

내의인사금액 로그아웃

===== 열린 화면 목록 =====

사업단관리 > 사업단정보

사업단 검색: 2012 사업단 사업단유형 전체 폐업유무 무 유

사업단 정보 ※ 사업기간의 종료일자를 수정시 종료된 사업단은 종료일자 이후의 근태정보 존재시 수정불가

사업년도: 2012 사업단명: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종류: 청소 사업단유형: 자활인큐베이팅 사업기간: 2012-01-01 ~ 2012-12-31 사업종류: 청소 사업단유형: 자활인큐베이팅 사업기간: 2012-01-01 ~ 2012-12-31 사업종류: 청소 사업단유형: 자활인큐베이팅 사업기간: 2012-01-01 ~ 2012-12-31

사업자 정보

대표자: 임태종 주민번호: 111111-1111 사업자등록번호: C12070001

사업허가일: 2012-01-01 사업종류: 청소 사업단유형: 자활인큐베이팅 사업기간: 2012-01-01 ~ 2012-12-31 사업종류: 청소 사업단유형: 자활인큐베이팅 사업기간: 2012-01-01 ~ 2012-12-31

사업자등록번호: C12070001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 사업단의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사업년도, 사업단명, 사업종류, 사업단유형

※ 사업단유형이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일 경우 광역자활공동체여부, 인정일 필수 입력

(3) 사업단배정

○ [이력정보] > [사업단관리] > [사업단배정]

S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API - Windows Internet Explorer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 관리 세무 고객관리 이력정보 시군구보고

자활이력

새글추가 [모크이미지]

자활이력

> 사업단관리 > 사업단배정

[신규] [조회] [저장] [삭제] [엑셀] [출력] [닫기]

검색년도 2011 사업단 전체 사업단유형 전체 ※ 2010년부터 승인된 사업단만 조회/배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	인적사항
사업단유형: 시장전입형	성명: [] 주등록번호: [] 보장구분: []
팀장:	주소: []
사업기간: 2011-01-01~2011-12-31	참여일자: 2011-03-15 인건비보조: 고용보험 □ 유 ○ 무
현/정원: 18/	경력유무: □ 유 ○ 무 작업장소: 직무: []
보장구분: 일반(6)조건(6)자활(5)차상(1)	
성별: 남자(1)여자(17)	

☐ 종료된 사업단 포함 ☐ 사업단 종료자 포함 [조회]

[일괄배정] [배정취소] [탈퇴] [탈퇴취소]

순번	사업단	현/정원	구분	사업
1		1/2	진행중	2011-01-01~
2		0/0	진행중	2011-01-01~
3		12/0	진행중	2011-01-01~
4		18/	진행중	2011-01-01~
5		1/0	진행중	2011-01-01~
6		15/10	진행중	2011-01-01~
7		11/0	진행중	2011-01-01~
8		4/20	진행중	2011-01-01~
9		7/0	진행중	2011-01-01~
10		2/0	진행중	2011-01-01~
11		11/10	진행중	2011-01-01~
12		9/15	진행중	2011-01-01~
13		10/10	진행중	2011-01-01~

순번	성명	구분	현재상태	보장구분	참여일자	인건비보조	고용보험	경력유무	작업장
1	참여	사업단	일반수급자	2011-01-01~		유	유		
2	참여	사업단	자활특례	2011-01-01~		유	무		
3	참여	사업단	자활특례	2011-01-01~		유	무		
4	참여	사업단	조건부수급자	2011-01-01~		유	무		
5	참여	사업단	조건부수급자	2011-01-01~		유	무		
6	참여	사업단	자활특례	2011-01-01~		유	무		
7	참여	사업단	조건부수급자	2011-01-01~		유	무		
8	참여	사업단	자활특례	2011-01-01~		유	무		
9	참여	사업단	조건부수급자	2011-01-01~		유	무		
10	참여	사업단	일반수급자	2011-01-01~		유	무		
11	참여	사업단	차상위	2011-01-01~		유	무		
12	참여	사업단	일반수급자	2011-01-01~		유	무		
13	참여	사업단	일반인	2011-01-01~		유	무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 열린 화면 목록 =====

- 참여자를 사업단별로 배정합니다.

1. 공통

(4) 사업단 참여자 급여내역

○ [이력정보] > [사업단관리] > [근무기록적용정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AP1 - Windows Internet Explorer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경리 관리 세무 고객관리 이력정보 시군구보고

자활이력

메뉴검색기

자활이력

사업단관리 > 근무기록적용정산

사업년도 2011 사업단 선택 * 자활공동체의 근무기록적용정산은 근무기록적용정산(공동체) 메뉴에서 입력하세요

사업단 현황

사업단 소득커속월 [이월] 사업단유형 시장전입형 사업단유형 시장전입형 설립일자 2011-01-01 ~ 2011-01-31

노임지급일 2011-01-01 ~ 2011-01-31

※ 출근 : 총 근로일자 (자각/조퇴 포함) 고용보험 - 산고액 * 0.0045(원단위결사)
 ※ 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은 차상위계층/일반인 참여자만 계산됩니다.

☒ 노임지급액 원단위 결산 ☒ 고용보험 계산시 실비포함 ☒ 조건부 수급자 고용보험 제외
☒ 자립준비청년금 발생 (실비,월차,휴일,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총지급액 +10%) 세금계산 : ☒ Y ☐ N ☐ 미전달(4대보험포함)

☒ 근무기록적용정산(일괄) ☐ 근무기록적용정산(개별) ☐ 자료편집 정산 ☐ 기본항목표기 ☐ 전체항목표기

순번	성명	경력	총 참여일	총 근무시간	출연장근무시간	총 근무금액 (장차+휴일)	출연장 근무금액	총 실비 금액	주요	
			시간	분	시간	분				
1		경력	21	168	0	0	0	672,000	0	63,000
2			21	168	0	0	0	630,000	0	63,000
3			21	168	0	0	0	630,000	0	63,000
4		경력	21	168	0	0	0	672,000	0	63,000
5			21	168	0	0	0	630,000	0	63,000
6			21	168	0	0	0	630,000	0	63,000
7			21	168	0	0	0	1,470,000	0	0
합계								9,198,000	0	756,000

구분	일 노임	일 실비
일반	30,000	3,000
경력	32,000	3,000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 열린 화면 목록 *****

- 사업단 참여자별 급여내역을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총지급액

1. 공통

(5) 자활기업 참여자 급여내역

○ [이력정보] > [사업단관리] > [근무기록적용정산(공동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AP1 - Windows Internet Explorer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경리 관리 세무 고객관리 이력정보 시군구보고

자활이력

새뉴스기 > 자활이력

사업단관리 > 근무기록적용정산 (공동체)

사업년도 2011 자활공동체 소독기속월

조회된 01 월 정보목록에 선택 의 근무기록적용정산 정보를 가져오기 (가져온 정보는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미입력정보 입력정보 급여정보 입력 및 '가져오기'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기본항목표기 전체항목표기

선택	순번	성명	성별	총 참여일	총 근무시간	총 연장근로시간	총 근무금액	총 연장금액	총 심비	주차회수	주차금액	월차회수	월차금액	잔액	관리자수
				시간	분	시간	분	(정장+휴일)							
☐	1			0	0	0	0	0	0	0	0	0	0	0	0
☐	2			21	0	0	0	0	0	0	0	0	0	0	0
☐	3			21	0	0	0	0	625,960	0	44,000	0	0	0	0
☐	4			21	0	0	0	0	900,000	0	44,000	0	0	0	0
☐	5			0	0	0	0	0	0	0	0	0	0	0	0
☐	6			21	0	0	0	0	0	0	0	0	0	0	0
☐	7			21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합계						1,525,960	0	88,000	0	0	0	0	0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 열린 화면 목록 =====

- 자활기업 참여자의 급여내역을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총지금액, 한시적인건비

2. 사업단운영

(1)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①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경리]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관리] > [결의서등록]

결의서등록/수정

결의서등록/수정

수입결의 | 지출결의

수정시 만드는 경우
1. 마감 2.후원금 회계 변경 3.신용카드 정산 4.승인전표(미승인결의) 5. 회계입력제한일자

결의일자: 2011-01-27 | 일자변경 | 복사 | 사용자결의번호: 1 | 사업명: [001] 2011 사업단

첨언내용

결의서 | 일자상세 | 분개내역

행추가 | 행삭제 | 결의서템플릿

순번	+수입계좌	+계정명(대변)	거래처	+금 액	적 요	+자금원천	VAT
1	2011사업단-매출액[111]	상품판매대금	1298209797 서울상사	1,000,000		수익사업	VAT
합 계				1,000,000			

결의서 목록 | 2011-01-27 ~ 2011-01-27

순번	결의일자-번호	결의서구분	적요(거래처)	수입금액	지출금액	전표승인	사 업 명	자금원천	결의서	전표
1	2011/01/27-1	수입결의서	(서울상사)	1,000,000	0	승인	[001] 2011 사업단	수익사업	출력	출력
합 계				1,000,000	0					

- 사업단별 매출액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수입계좌, 계정명, 금액

2. 사업단운영

(1)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②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경리] > [결의및전표관리] > [결의서관리] > [결의서등록]

결의서등록/수정

결의서등록/수정

수입결의 지출결의

수정이 안되는 경우
1. 마감 2.후월금 회계 변경 3.신용카드 정산 4.승인전표(매승인권자) 5. 회계입력제한일자

결의일자: 2011-01-27 일자변경 복사 사용자결의번호: 4 사업명: [001] 2011 사업단

첨언내용

결의서 일자상세 분개내역

▶행추가 ▶행삭제 결의서템플릿 3 건

순번	+수입계좌	+계정명(대변)	거 래 처	+금 액	적 요	+자금원천	VAT
1	2011사업단-매출액[111]	물품판매대금		-700,000		수익사업	✓ VAT
2	2011사업단-매출액[111]	용역수입금		-700,000		수익사업	✓ VAT
3	2011사업단-수익금[333]	수익금		1,400,000		수익사업	✓ VAT
합 계				0			

결의서 목록 2011-01-27 ~ 2011-01-27 1 건

순번	결의일자-번호	결의서구분	적요(거래처)	수입금액	지출금액	전표승인	사 업 명	자금원천	결의서	전표
1	2011/01/27-4	수입결의서		0	0	승인	[001] 2011 사업단	수익사업	출력	출력
합 계				0	0					

- 사업단별 수익금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수입계좌, 계정명, 금액

2. 사업단운영

(2)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① 만족도 조사(1/2)

○ [이력정보] > [수혜자관리] > [기본사항]

국가복지자활센터(테스트)(E095) 김유신님 로그인

자활이력

수혜자관리 > 기본사항

전체 | 이용일자 | 이용종료일자 | 검색일자: 2011-09-01 ~ 2011-09-30 | 성명: | 구분: |

순번	성명	주민번호	연령	보장구
1	봉하일		0	
2	박주희	651224-2*****	0	
3	조우성	900409-1*****	3	
4	신주희	651224-2*****	3	
5	최우성	900409-1*****	0	
6	조우빈	951031-1*****	0	
7	김수혜		3	자활특

기본사항 | 가족사항 | 서비스현황

인적사항

성명: 김수혜 | 주민번호: | 남 / 여

생년월일: 2009-09-01 | 성별: ☒ 남 ☐ 여

혼인유무: ☐ 유 ☒ 무

전화번호: 02-1212-12121 | 휴대전화: 010-2100-20202

최종학력: 초등학교졸 | 종교: 기독교

장애유무: ☐ 유 ☒ 무

장애유형: | 질병유형: |

대상선정일자: 2011-06-01 | 이용시작일: 2011-06-01 | 이용시작경위: |

이용종료일: | 이용종료사유: | 생활구분: |

주소: 641-730 | 경남 창원시 신월동 한국은행경남지점 건너편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 열린 화면 목록

- 서비스 수혜자의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또는 전화번호), 이용시작일

※서비스 수혜자가 기관(업체)일 경우 성명(기관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입력

2. 사업단운영

(2)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① 만족도 조사(2/2)

○ [이력정보] > [수혜자관리] > [서비스관리]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서비스관리' (Service Management) interface. On the left is a sidebar menu with options like '참여자관리', '사업단관리', '수혜자관리', '기본사항', '이용/종료관리', '서비스관리' (selected), '접수리전환과정', '프로그램관리', '보고서관리', and '공통정보'. The main area has a breadcrumb '수혜자관리 > 서비스관리' and a toolbar with icons for '복사', '신규', '조회', '저장', '삭제', '엑셀', '출력', and '일기'. Below this is a filter section with '사업년도' (2011) and '사업단' (전체). A table lists service records with columns: '순번', '서비스일자', '참여자', '수혜자', '사업단', and '서비스명'. The table contains 4 rows of data. To the right of the table is a form for adding new services, with fields for '사업년도' (2011), '사업단' (dropdown), '참여자' (김태희), '수혜자' (김수혜), '서비스일자' (2011-06-15), '서비스명' (가사방문), and '방문시간' (11:00 ~ 18:00). Below the form is a large text area labeled '내용' and buttons for '첨부파일' and '첨부화일 보기'. The footer shows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and a status bar with the date '2011-09-27' and time '오후 3:00'.

순번	서비스일자	참여자	수혜자	사업단	서비스명
1	2011-06-15	김태희	김수혜	사업단	가사방문
2	2011-06-14	김태희	김수혜	사업단	가사방문
3	2011-06-01	김태희	김수혜	2011 사업단	가사방문
4	2011-05-06	테스트	김수혜	2011 사업단	가사방문

- 서비스 수혜자별 수혜이력을 등록합니다.

- 필수입력 : 사업년도, 사업단, 수혜자, 서비스일자, 서비스명

3. 참여자 관리

(1) 직무교육·소양교육·사례회의

○ [이력정보] > [프로그램관리] > [프로그램계획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Program Planning' (프로그램계획서) form within the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The interface is viewed through a Windows Internet Explorer browser.

Navigation Menu (Left Sidebar):

- 참여관리 (Participant Management)
- 사업단관리 (Project Management)
- 수혜자관리 (Beneficiary Management)
- 프로그램관리 (Program Management) - **Selected**
 - 프로그램계획서 (Program Planning) - **Selected**
 - 프로그램일지 (Program Log)
 - 프로그램평가 (Program Evaluation)
 - 사례회의관리 (Case Conference Management)
 - 상담관리 (Counseling Management)
 - 외부자원동원현황 (External Resource Mobilization Status)
- 보고서관리 (Report Management)
- 공통정보 (Common Information)

Main Form Area:

Header: 프로그램관리 > 프로그램계획서

Filters:

- 계획일자 (Planning Date): 2010-01-01 ~ 2011-03-31
- 프로그램분류 (Program Category): [Search]
- 프로그램제목 (Program Title): [Search]

Table:

구분 (Category)	사업단 (Project)	프로그램 분류 (Program Category)	프로그램 제목 (Program Title)
-12			
-01			
-10			
-10			
-20			
-30			
-10			
-18			
-05			
-20			
-31			
-02			

Form Fields (Right Panel):

- ☒ 프로그램분류: 공동체창업준비교육
- ☒ 프로그램제목: [Search]
- 계획일자: 2010-03-31
- 시작일자: [Dropdown]
- 종료일자: [Dropdown]
- 대상자지정: ☐ 여 ☐ 남
- 대상인원: [Dropdown]
- 프로그램 회수: 선택
- 온라인: ☐ 오프라인: ☐ 시간: [Dropdown]
- 법정의무교육여부: ☐ Y ☐ N
- 장소: [Text]
- 진행자: [Text]
- 목적: [Text]
- 내용: [Text]
- 예산집행여부: ☒ 집행 ☐ 집행안함
- 예산금액: 0
-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기
- 사업단: 2010
- 참여자 선택: [Dropdown]

Participant List (Bottom):

선택	구분	성명	생년월일
☒	참여자	[Name]	1967-09-26
☐	참여자	[Name]	1960-03-16

Footer: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 열린 화면 목록 =====

-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사례회의 이력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프로그램분류, 프로그램제목, 계획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프로그램(교육)유형, 온/오프라인, 시간, 법정의무교육여부, 참여자
- 프로그램유형 : 직무교육→교육, 소양교육→워크샵·기타, 사례회의→회의

4. 센터운영

(1)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1/2)

○ [관리] > [인사관리] > [인사카드관리]

The screenshot shows the '인사카드관리' (Employee Card Management) page in a web browser. The page has a sidebar with a tree view containing '인사관리' (HR Management) and '인사카드관리' (Employee Card Managemen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인사카드등록' (Employee Card Registration) and contains a table of employees. The table has columns for '부서' (Department), '직원번호' (Employee Number), and '직원명' (Employee Name). Below the table, there are tabs for '기본사항' (Basic Information), '신상명세서' (Personal Information), '학력사항' (Education), '경력사항' (Experience), '가족사항' (Family), '보증, 추천인' (Guarantee, Referee), '자격면허' (License), and '외국어' (Foreign Language). The '기본사항' tab is selected, showing fields for '성별' (Gender), '입사구분' (Hire Type), '채용구분' (Recruitment Type), '급여지급기준' (Pay Standard), '정원내외구분' (In/Out of Quota), '비상연락처' (Emergency Contact), '승호대상' (Promotion Eligibility), '상근여부' (Regular Attendance), '현주소' (Current Address), '퇴사일' (Resignation Date), '전자우편' (Email), and '퇴사사유' (Reason for Resignation). There are also checkboxes for '인건비' (Personnel Cost) and '사업비' (Business Cost).

- 종사자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이름, 시설입사일, 퇴사일(퇴사했을 경우), 급여지급기준

※ 급여지급기준

- 인건비 :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할 경우
- 사업비 : 급여를 “사업비”로 지급할 경우

4. 센터운영

(1)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2/2)

○ [이력정보] > [프로그램관리] > [프로그램계획서]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titled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API - Windows Internet Explorer'. The main menu includes '경리', '관리', '세무', '고객관리', '이력정보', and '시군구보고'. The left sidebar lists various management functions like '참여자관리', '사업단관리', '수혜자관리',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계획서', '상담관리', '외부자원동원현황', '보고서관리', and '공통정보'. The main area is titled '프로그램관리 > 프로그램계획서'. It features a table with columns for '사업단' (Agency), '프로그램 분류' (Program Category), and '프로그램 제목' (Program Title). Below the table, there is a detailed form for editing a program, including fields for '계획일자' (Plan Date), '프로그램 분류' (Program Category), '프로그램 제목' (Program Title), '시작일자' (Start Date), '종료일자' (End Date), '대상자지정' (Designated Recipients), '프로그램 유형' (Program Type), '장소' (Location), '목적' (Purpose), '내용' (Content), '예산집행여부' (Budget Execution Status), '예산금액' (Budget Amount), '참가파일' (Participation File), '참부화일 보기' (View Attachment), '사업단' (Agency), '연도' (Year), and '참여자 선택' (Select Participants). The '참여자' (Participants) tab is active, showing a list of participants with columns for '선택' (Select), '구분' (Category), '성명' (Name), and '부서' (Department).

-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력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프로그램분류, 프로그램제목, 계획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프로그램(교육)유형, 온/오프라인, 시간, 법정 의무교육여부, 직원
- 프로그램유형 : 직무교육→교육

4. 센터운영

(2) 종사자 근속년수

○ [관리] > [인사관리] > [인사카드관리]

인사카드관리

부서	직원번호	직원명
11111	00001	김인사
11111	00002	가나다
11111	00003	급여담당

합계 3명

인사카드등록

부서: [선택하세요] 직원명: [선택하세요]

필수입력 항목의 코드는 인사>기초코드관리 메뉴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직원번호	00001	주민번호	
이름	김인사	부서	11111
이름(한자)		직위	
이름(영문)		직급	
법입사일	2008-06-08	직책	
시설입사일	2008-06-08	직종	
근무상태	정상	호봉	0

상별: 기본사항, 교육연수, 출장, 휴가, 발령, 메모사항, 근무현황

기본사항

성별: 남, 여, 기타

입사구분: 신입, 채용구분: 공채, 급여지급기준: 인건비, 사업비

전화번호: , 정원내외구분: 정원외, 비상연락번호: , 순호대상할: , 상근여부: ☒

이동전화: , 담당업무:

특이사항:

현주소: ,

비상연락처: ,

퇴사일: , 전자우편:

퇴사사유코드: , 퇴사사유: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 종사자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이름, 시설입사일, 퇴사일(퇴사했을 경우), 급여지급기준

※ 급여지급기준

- 인건비 : 급여를 “인건비”로 지급할 경우
- 사업비 : 급여를 “사업비”로 지급할 경우

4. 센터운영

(3) 외부자원 후원

○ [이력정보] > [프로그램관리] > [외부자원동원현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API - Windows Internet Explorer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리 관리 세무 고객관리 이력정보 시군구보고

새뉴스추가

자살이력

프로그램관리 > 외부자원동원현황

검색년월 2011 연계기관명

순번	연도	연계기관명	외부자원동원내역

년도 2011

연계기관명

지원구분 재정적지원 물품지원

지원금액 원

외부자원동원내역

Copyright(C)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 열린 화면 목록 =====

- 외부자원 동원에 대한 현황을 관리합니다.
- 필수입력 : 년도, 연계기관명, 지원구분, 지원금액

[부록-1] 2014년도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304개)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기획재정부(3)		한국조폐공사(1)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2)
교육부(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 공단(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18)
미래창조과학부 (3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재)우체국응용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8)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구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물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지연구원, 한국전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30)
외교부(3)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3)
통일부(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국방부(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2)
안전행정부(3)			공무원연금공단(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
문화체육관광부 (34)		한국관광공사(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회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4)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 콘텐츠진흥원(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포교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7)
농림축산식품부 (9)		한국마사회(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3)
산업통상자원부 (41)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2)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	㈜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전라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10)			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3)	(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
보건복지부(18)			국민연금공단(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1)
환경부(5)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
고용노동부(12)			근로복지공단(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5)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직업진흥원, 한국잡월드 (6)
여성가족부(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원 (2)	
국토교통부(2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2)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7)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5)	㈜위더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 (9)
해양수산부(14)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2)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3)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3)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6)
국무조정실(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방송통신위원회(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			
원자력안전위원회(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1)
금융위원회(12)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2)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신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은금융지주 (5)

주무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87)
	시장형(14)	준시장형(16)	기금관리형(17)	위탁집행형(70)	
			태금용공사 (5))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국가보훈처(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주)(1)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2)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보호재단(1)
산림청(2)				한국임업진흥원(1)	녹색사업단(1)
농촌진흥청(1)				농업기술실용화재단(1)	
중소기업청(7)			중소기업진흥공단(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4)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산보호협회 (4)
식품의약품안전처 (3)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1)	한국회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
기상청(1)				한국기상산업진흥원(1)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1)	
소방방재청(1)				한국소방산업기술원(1)	

♣ NOTE...